

2022
KYONGGI
UNIVERSITY
대학원 학사업무안내

경기대학교 교육이념, 대학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건학이념

진(眞) - 진리

성(誠) - 근면, 성실

애(愛) - 효와 사랑

교육이념

지성·덕성·감성의 조화를 바탕으로 자율적 인격을 갖추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진·성·애의 창학이념을 구현하고, 고도 기술사회에 적절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고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여 학술과 국가 및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대학에서 이수한 일반 및 전문교육을 기초로 하여 전문분야의 연구를 지도하며 특히 자료의 수집, 분석, 종합하는 능력과 연구방법의 터득을 목표로 한다.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석사학위 과정에서 연마한 종합능력과 연구방법을 기초로 하여 전문분야를 심도있게 탐구하고 독창적인 연구를 통해 종래의 학문이론에 공헌적인 수정 또는 새로운 이론의 창의력을 배양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지도 능력을 갖게 함을 목표로 한다.



차



레

I. 2022학년도 학사일정표	9
II. 대학원 행정기구	13
III. 학사업무안내	17
IV. 대학원 학칙	39
V.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71
VI. 대학원 학칙시행내규	101

I . 2022학년도 학사일정표

2022학년도 학사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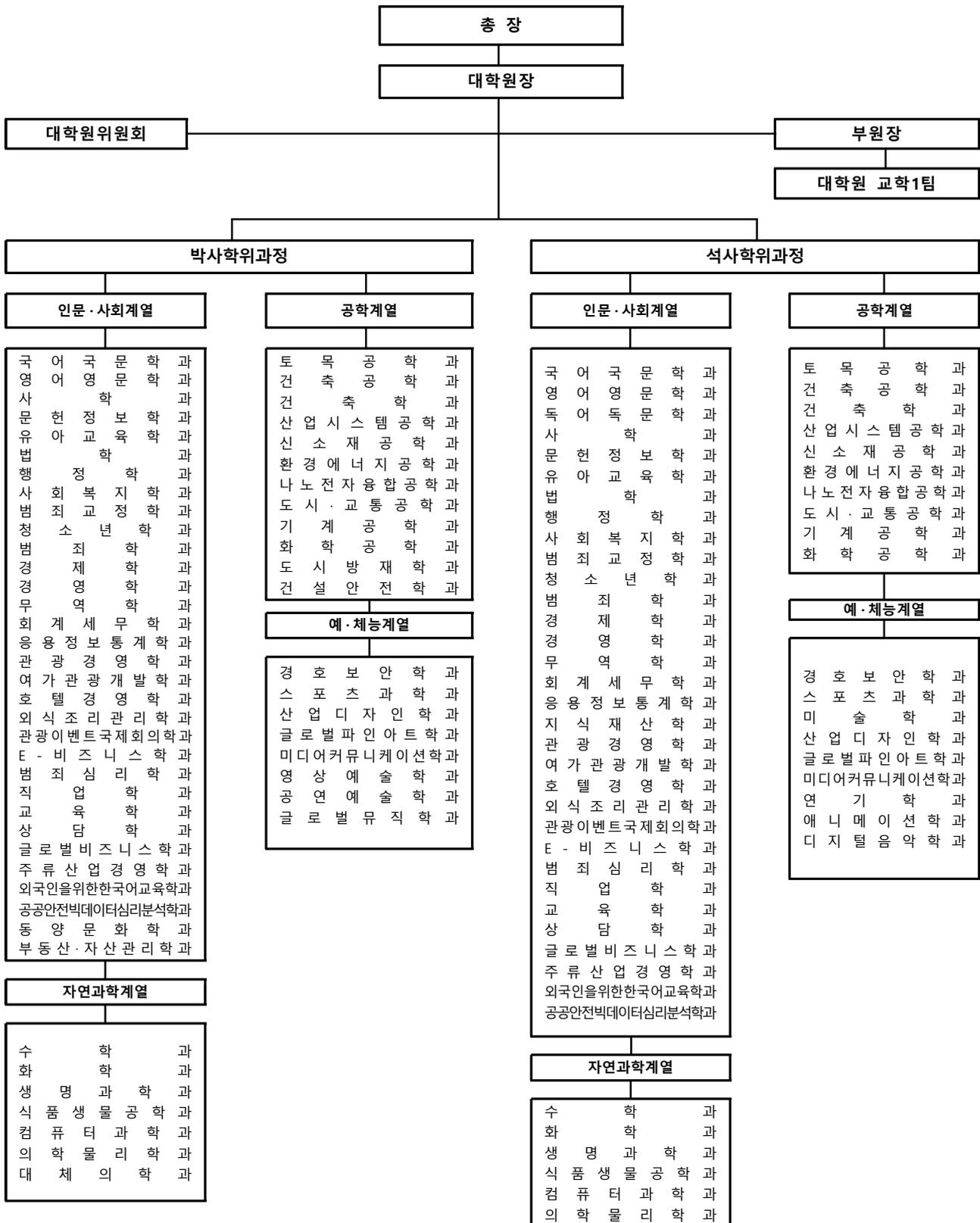
1 January							8 August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8월1일~26일	연구등록신청서 접수 휴학 및 복학 원서 접수					
						1							6	8월1일~12일	재입학 원서 접수 교외 타대학원 학점교류신청 접수					
2	3	4	5	6	7	8	7	8	9	10	11	12	13	8월10일~26일	재학생 및 신입생 수강신청 광복절					
9	10	11	12	13	14	15	14	15	16	17	18	19	20	8월15일	재학생 등록					
16	17	18	19	20	21	22	21	22	23	24	25	26	27	8월16일~19일	202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3	24	25	26	27	28	29	28	29	30	31										
30	31																			
2 February							9 September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월 1일	학기개시일, 2학기 개강					
		1	2	3	4	5						1	2	3	9월 1일~8일	신입생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 외국어시험 응시원서 접수				
6	7	8	9	10	11	12	4	5	6	7	8	9	10	9월 9일~12일	추석연휴					
13	14	15	16	17	18	19	11	12	13	14	15	16	17	9월 8일~16일	재학생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					
20	21	22	23	24	25	26	18	19	20	21	22	23	24	9월 19일~30일	신입생 및 편입생 선수과목 인정 및 이수지정서 제출					
27	28						25	26	27	28	29	30	9월 24일	외국어시험 전형						
														9월 26일~30일	외국어강좌 접수					
														9월 27일	수업일수 1/4선					
														9월 28일	외국어시험 결과발표					
														9월 28일~10월5일	종합시험 접수					
3 March							10 October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월 3일	개천절					
		1	2	3	4	5							1	10월 둘째 주	외국어강좌 시작					
6	7	8	9	10	11	12	2	3	4	5	6	7	8	10월10일	한글날 대체공휴일					
13	14	15	16	17	18	19	9	10	11	12	13	14	15	10월22일	종합시험 전형					
20	21	22	23	24	25	26	16	17	18	19	20	21	22	10월24일	수업일수 2/4선					
27	28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April							11 November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1월 2일	종합시험 결과발표					
													1	2	3	4	5	11월 2일~18일	석.박사 학위논문 공개발표 및 결과보고서 제출	
3	4	5	6	7	8	9	6	7	8	9	10	11	12							석.박사 학위논문 본심사 신청 및 심사위원 제청
10	11	12	13	14	15	16	13	14	15	16	17	18	19							논문지도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17	18	19	20	21	22	23	20	21	22	23	24	25	26						11월 8일	개교기념일
24	25	26	27	28	29	30	27	28	29	30									11월18일	수업일수 3/4선
																			11월21일~12월 2일	석.박사 지도교수제청서 및 학위논문 계획서 제출(2학기생)
																			11월21일~12월23일	석.박사 학위논문 본심사 및 결과 보고서 제출
5 May							12 December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2월 1일~14일	재학생 학비감면장학금 신청					
1	2	3	4	5	6	7							1	2	3	12월 5일~26일	성적입력기간(26일 13시까지)			
8	9	10	11	12	13	14	4	5	6	7	8	9	10	12월14일	수업일수 4/4선					
15	16	17	18	19	20	21	11	12	13	14	15	16	17	12월15일	동계방학					
22	23	24	25	26	27	28	18	19	20	21	22	23	24	12월15일~21일	보강기간					
29	30	31					25	26	27	28	29	30	31	12월25일	성탄절					
														12월26일~30일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12월28일	성적인터넷공시					
														12월30일~1월4일	성적정정(4일 13시까지)					
6 June							1 January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월 1일	신정					
													1	2	3	4	1월21일~23일	설연휴		
5	6	7	8	9	10	11	8	9	10	11	12	13	14	1월 24일	대체휴일					
12	13	14	15	16	17	18	15	16	17	18	19	20	21							
19	20	21	22	23	24	25	22	23	24	25	26	27	28							
26	27	28	29	30			29	30	31											
7 July							2 February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월 1일~24일	연구등록신청서 접수					
													1	2	3	4	2월 6일~17일	휴학 및 복학 원서 접수 재입학 원서 접수		
3	4	5	6	7	8	9	5	6	7	8	9	10	11							
10	11	12	13	14	15	16	12	13	14	15	16	17	18							
17	18	19	20	21	22	23	19	20	21	22	23	24	25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31																				

* 본 학사일정은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대학원 행정기구

1. 경기대학교 대학원 기구표
2. 대학원 행정조직

1. 경기대학교 대학원 기구표



2. 대학원 행정조직

- ▣ 대학원장 : 김응수(031-249-9059)
- ▣ 교학팀장 : 이동규(031-249-9061)
- ▣ 팀원(수원) : 정서영(031-249-9062), 조해욱(031-249-9063), 쉬위예(031-249-9062,3)
- ▣ 조교(수원) : 강민재, 장예지, 주홍준 (031-249-9060, 9064, 9065)
조교(서울) : 김수궁(02-390-5244)
- ▣ FAX : 031-249-9066(수원), 02-313-4131(서울)

◆ 대학원 주임교수

학과	주임교수	학과	주임교수	학과	주임교수
E-비즈니스학과*	진창현	디지털음악학과(석)	박병규	여가관광개발학과	김민주
건설안전학과(박)*	최병정	무역학과	김소형	연기학과(석)	남상식
건축공학과	신윤석	문헌정보학과	조미아	영상예술학과(박)*	이규정
건축학과	최진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수정	영어영문학과	공석
경영학과	이동희	미술학과(석)*	김윤	외국인을위한한국어교육학과*	공성수
경제학과	한상범	범죄심리학과*	신나영	외식조리관리학과	한경수
경호보안학과	안황권	범죄교정학과	김병배	유아교육학과	이부미
공연예술학과(박)*	남상식	범죄학과	황의갑	응용정보통계학과	나옥경
관광경영학과	이재섭	법학과	전윤구	의학물리학과*	
관광이벤트국제회의학과	이병철	부동산·자산관리학과(박)*	최성호	주류산업경영학과*	김기영
교육학과*	하봉운	사학과	이왕무	지식재산학과(석)	
국어국문학과	공성수	사회복지학과	박소연	직업학과*	김은지
글로벌뮤직학과(박)*	박병규	산업디자인학과*	유보현	청소년학과	김청송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김은진	산업시스템공학과	성시일	컴퓨터과학과	김도훈
글로벌파인아트학과(박)*	이광춘	산업보안학과*	김도훈	토목공학과	김낙석
기계공학과	이신표	상담학과*	박연규	행정학과	하태수
나노·전자융합공학과	오민석	생명과학과	공동수	호텔경영학과	이수광
대체의학과(박)*	김애정	수학과	공석	화학공학과	김상범
도시교통공학과	신치현	스포츠과학과*	이홍구	화학과	하영근
도시방재학과(박)*	김낙석	식품생물공학과	이종훈	환경에너지공학과	김성수
독어독문학과(석)	강명희	신소재공학과	유상우	회계세무학과	임형주
동양문화학과(박)*	김주환	애니메이션(석)	최돈일	공공안전빅데이터심리분석학과	전준철

* 연계학과

Ⅲ. 학사업무안내

1. 교육과정 및 수강
2. 대학원 주요 학사업무 및 일정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4. 학위논문
5. 대학원 장학금
6. 대학원 학술연구활동 지원
7. 대학원생 연구논문 학술지 게재 장려금 지원
8. 학생증 발급
9. 제증명 발급
10. 주차권 발급
11.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1. 교육과정 및 수강

가. 졸업 이수학점 및 학기당 이수학점

구 분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과정
졸업 이수학점	24학점	36학점
학기당 수강 학점	최대 9학점	최대 9학점

※ 졸업 이수학점은 각 학위과정 별 전공학점만을 의미하며, 선수과목 학점은 별도로 인정받거나 이수하여야 함.

나. 선수과목 인정 및 이수 안내

- 1) 입학한 학위과정의 전공과 하위과정 전공의 동일계 여부에 따라, 선수과목을 인정받거나 이수하여야 함.
- 2) 학위과정 별 선수과목 인정 및 이수 학점

학위과정	선수과목 인정 및 이수 학점	선수과목 인정 및 이수 방법
석사학위 과정	9학점	학부과정 전공과목 인정 및 이수
박사학위 과정	12학점	석사과정 전공과목 인정 및 이수

3) 선수과목 인정 및 이수 절차

가) 선수과목 학점 인정

- 입학 후 첫학기 중 학과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선수과목 학점 인정서 작성 및 제출

구 분	최대 인정 가능 학점
하위과정에서 동일계열 학과를 졸업한 경우	석사과정 최대 9학점/박사과정 최대 12학점
하위과정에서 유사 또는 비동일계열 학과를 졸업한 경우	석사과정 최대 6학점/박사과정 최대 9학점

나) 선수과목 학점 이수

- 위 과정을 거쳐 '인정'된 학점을 제외하고, 남은 학점은 학위과정 재학 중 '이수'
- 재학 중 선수과목 이수 시, 선수과목은 학과에서 지정해 준 하위과정 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해당학과 요람의 선수과목을 확인하여 수강신청 및 이수
- 선수과목 이수 시기 : 석사과정 3학기 이내, 박사과정 4학기 이내 이수 원칙
- 선수과목 이수 학점은 졸업을 위한 전공과목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
- 선수과목은 전공과목과 별도로 학기 당 6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선수과목 학점 인정 예시

구 분	동일학과 입학자	유사학과 입학자	비동일학과 입학자
정의	대학원에 입학한 학과가 하위과정에서 전공한 학과와 동일한 경우	대학원에 입학한 학과와 하위과정에서 전공한 학과가 유사한 경우	대학원에 입학한 학과와 하위과정에서 전공한 학과가 상이한 경우
예시	석사과정 : 관광경영학과 입학 학사과정 : 관광경영학과 졸업	석사과정 : 관광경영학과 입학 학사과정 : 관광학과 졸업	석사과정 : 관광경영학과 입학 학사과정 : 영어영문학과 졸업
선수과목 인정학점	석사과정 : 최대 9학점 박사과정 : 최대 12학점	석사과정 : 최대 6학점 박사과정 : 최대 9학점	석사과정 : 최대 6학점 박사과정 : 최대 9학점

구 분	동일학과 입학자	유사학과 입학자	비동일학과 입학자
선수와목 이수 해당 여부	선수와목 이수 "미해당" (선수와목을 이수할 필요 없음)	선수와목 이수 "해당" (선수와목을 이수하여야 함)	선수와목 이수 "해당" (선수와목을 이수하여야 함)
선수와목 인정 및 이수 지정서 작성 요령	1. 선수와목 해당여부: 미해당 2. 선수와목&인정교과목 : 미기입 3. 본교 인정 학점 총계 : 총 인정학점 기입	1. 선수와목 해당여부: 해당 2. 선수와목&인정교과목: 기입 (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하위과정의 취득 교과목/학점과 본교 인정 선수와목/학점 기재) 3. 본교 인정 학점 총계 : 총 해당 인정학점 기입	1. 선수와목 해당여부: 해당 2. 선수와목&인정교과목: 기입 (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하위과정의 취득 교과목/학점과 본교 인정 선수와목/학점 기재) 3. 본교 인정 학점 총계 : 총 해당 인정학점 기입 이수인정 과목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0학점" 으로 표기
선수와목 학점 인정 절차	선수와목 인정 및 이수 지정서'를 작성하여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입학 후 1달 이내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제출서류	"선수와목 인정 및 이수 지정서" 양식1부, 하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		

다. 편입학 학점인정

편입학 전공학점 인정	①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 및 학점을 주임교수가 확인하여 "편입학 학점인정서"제출 ② 전적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첨부 ③ 최대 18학점까지 인정 가능
선수와목 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학과와 하위과정의 전공학과를 학과 주임교수가 확인하여 '선수와목 인정 및 이수 지정서' 제출 ② 하위과정 성적증명서 첨부

라. 대학원 간 학점 교류

구 분	교내 타 대학원 학점교류	교외 타 대학원간 학점교류
교류대상	교내의 전문 및 특수대학원	명지대, 아주대, 건국대, 한양대, 인하대, 광운대, 수원대, 가천대, 단국대, 서울여대
교류학점	총 12학점 이하 (매학기 3학점이내)	총 12학점 이하 (매학기 3학점이내)
교류과목	교내 타 대학원에 개설된 전임교수의 담당 과목을 원칙으로 함 (소속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은 불가)	교외 타 대학원에 개설된 전임교수의 담당 과목을 원칙으로 함 (소속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은 불가)
학점교류 신청방법	대상 대학원의 해당과목을 수강신청한 후 교내·외 타대학원 수강신청서(대학원자료실 5651번) 양식 작성 후 대학원 교학팀 제출 ※ 주임교수 및 해당교과목 담당교수와 사전 협의 요망	

마. 수강신청

1)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 ①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로부터 수강지도를 받아, 교내 수강신청 사이트를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②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2) 수강신청 방법

①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www.kyonggi.ac.kr → 빠른서비스보기 → 수강신청
② 학생 로그인	학번과 비밀번호 입력 → 로그인 (최초 비밀번호는 'kutis+생년월일 6자리')
③ 좌측 메뉴 "수강신청" 선택	㉠ 조회방법 : "일반대학원" 선택 ㉡ 대 학 원 : "대학원(서울) 또는 대학원(수원)" 선택 ㉢ 학 과 : 해당학과 선택 ㉣ 조 회
④ 수강신청하기	『신청』을 누르면 해당 교과목이 수강신청 됨
⑤ 수강신청 변경 또는 삭제	수강신청LIST 부분에서 『삭제』를 누름
⑥ 수강신청 내역과 시간표 다시 조회	"수강신청내역조회" 버튼 누름
⑦ 수강신청 종료	"수강신청종료" 버튼 누름

- ⑧ 반드시 수강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수강신청내용을 다시 확인하여야 함.
(수강신청 오류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3) 수강신청 정정

- ① 폐강이나 기타의 사유로 수강신청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본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신청"에 로그인 한 후 변경하여야 함.
- ② 수강신청 정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함.
- ③ 수강신청 변경 후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대학원 주요 학사 업무 및 일정

일정	주요학사업무	자 격
3월, 9월	학과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2월,8월)	신입생
	선수과목 학점인정서 제출	1학기 재학생(석·박사 공통)
	외국어시험원서 접수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석·박사 공통) * 단 휴학생 응시 불가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원서 접수	석사학위 과정: 외국어시험에 합격 및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을 취득한 자 박사학위 과정: 외국어시험에 합격 및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을 취득한 자 * 단 휴학생 응시 불가
4~5월, 10~11월	종합시험	
5월, 11월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지도교수 위촉	2학기 재학생(석·박사 공통) : 신청서 제출 및 논문지도교수 배정
5월, 11월	논문공개발표	석사학위 과정 : 4학기 (학부연계 학기단축자 및 학석사 연계자는 3학기) 박사학위 과정 : 5학기(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6학기)
5~6월, 11~12월	논문심사	
6월, 12월	논문인쇄본 제출(최종)	논문 본심사 통과자
2월, 8월	학위수여식	석·박사 학위수여 대상자

◇◇ 입학에서 졸업까지 ◇◇

과정구분	입학구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비고
석사과정	일반	1.수강신청(최대 9학점) 2.선수과목인정 및 이수지정서 제출 3.외국어시험가능	1.휴학/복학신청 2.등록금납부 3.수강신청(최대 9학점) 4.외국어시험가능 5.학위논문계획서 논문지도교수신청서 연구윤리교육수료증 연구윤리서약서제출	1.휴학/복학신청 2.등록금납부 3.수강신청(최대 9학점) 4.종합시험실시	1.휴학/복학신청 2.등록금납부 3.공개발표관련서류제출 4.본심사관련서류제출 5.논문지도종합결과보고서제출 6.표절검사결과보고서제출			
		1.수강신청(최대 9학점) 2.선수과목인정 및 이수지정서 제출 3.외국어시험가능	1.휴학/복학신청 2.등록금납부 3.수강신청(최대 9학점) 4.외국어시험가능 5.학위논문계획서 논문지도교수신청서 연구윤리교육수료증 연구윤리서약서제출	1.휴학/복학신청 2.등록금납부 3.수강신청(최대 9학점) 4.외국어시험가능	1.휴학/복학신청 2.등록금납부 3.수강신청(최대 9학점) 4.종합시험실시	1.휴학/복학신청 2.등록금납부 3.공개발표관련서류제출 4.본심사관련서류제출 5.논문지도종합결과보고서제출 6.표절검사결과보고서제출		
		1.수강신청(최대 9학점) 2.선수과목인정 및 이수지정서 제출 3.외국어시험가능	1.휴학/복학신청 2.등록금납부 3.수강신청(최대 9학점) 4.외국어시험가능 5.학위논문계획서 논문지도교수신청서 연구윤리교육수료증 연구윤리서약서제출	1.휴학/복학신청 2.등록금납부 3.수강신청(최대 9학점) 4.외국어시험가능	1.휴학/복학신청 2.등록금납부 3.수강신청(최대 9학점) 4.종합시험실시	1.휴학/복학신청 2.등록금납부 3.공개발표관련서류제출 4.본심사관련서류제출 5.논문지도종합결과보고서제출 6.표절검사결과보고서제출		
석사과정 학부연계 및 학석사연계	학부연계 1학기단축 및 학석사연계	1.수강신청(최대 9학점) 2.선수과목인정 및 이수지정서 제출 3.외국어시험가능 4.학위논문계획서 논문지도교수신청서 연구윤리교육수료증 연구윤리서약서제출	1.휴학/복학신청 2.등록금납부 3.수강신청(최대 9학점) 4.종합시험실시	1.휴학/복학신청 2.등록금납부 3.공개발표관련서류제출 4.본심사관련서류제출 5.논문지도종합결과보고서제출 6.표절검사결과보고서제출				*학부연계과정 등록금 감면 선택시 [석사과정- 일반] 적용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가. 외국어시험

1) 시험시기	매년 3월과 9월
2) 응시자격	각 학위과정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휴학생 응시 불가)
3) 응시과목	영 어
4) 합격인정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5) 시험(영어)교재	모든 학과 동일 / 대학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지
6) 외국어시험 면제	가) 대학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강좌를 수강하고 소정의 합격 판정을 받은 자 나) TOEFL 성적 530점(PBT) 또는 197(CBT) 또는 71점(IBT)이상, TOEIC 성적 700점이상, TEPS 성적 327점 이상인 자, IELTS 5.5 이상, CEFR(영어) B2, OPic IL 이상 다) 외국인학생은 국가공인 한국어능력검증시험 5급 이상(예체능계열 4급) * 제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관련 성적표 제출 라) 외국(영어권)의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

나. 외국어강좌

1) 대 상	석·박사학위과정 대학원생(수강자 20명 이상일 경우에만 개설됨, 휴학생 수강 가능)
2) 장 소	서울캠퍼스 및 수원캠퍼스
3) 방 법	24시간 이상 수업 실시(요일 및 시간은 매 학기 공고)
4) 합격인정	영어 강좌를 이수하여(출석률 75% 이상)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함.
5)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대학원 교학팀(서울, 수원캠퍼스) • 접수기간 - 매 학기 외국어시험 결과 발표 전후 소정기간

다. 종합시험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1) 시험시기	매년 4월(또는 5월 초)과 10월(또는 11월 초)	
2)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시험 합격 3학기(학기 단축 2학기) 이상 등록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시험 합격 4학기 이상 등록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3) 시험과목 (학과별 내규 참조)	• 2과목 이상 (70점 이상 합격)	• 3과목 이상 (70점 이상 합격)
4)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학생 응시 불가 입학 당시 학과 내규에 종합시험으로 지정된 과목 중 본인이 이수한 과목만 응시 가능 	

4. 학위논문

가. 논문 지도교수 위촉

석·박사학위과정 2학기 중에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함.
(학부연계 학기 단축자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1학기에 위촉함)

나. 논문 계획서 제출

석·박사학위과정 2학기 중에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위 논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학부연계 학기 단축자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1학기에 제출)

다. 공개발표 :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각 학과별로 논문내용을 공개 발표하여야 함.

- 공개발표 자격 :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자
- 공개발표 시기 :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학기

라. 학위논문 제출자격

석사 학위 과정	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자로 평균평점 B(3.0) 이상인 자 ②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③ 석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④ <u>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재학 중 2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자</u> ⑤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학부연계 학기 단축자는 3학기 이상) ⑥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본심사 완료 예정자 (단, 군복무 등 기타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공개발표를 통과한 자
박사 학위 과정	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자로 평균평점 B(3.0) 이상인 자 ②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③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④ <u>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재학 중 3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자</u>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재학 중 4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자) ⑤ 5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6학기 이상 정규등록자 또는 연구등록을 한 자) ※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해당과정 수료 후 학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고, 연구등록 학기는 논문 제출기한 이내로 하며, 연구등록금은 해당 학년도 등록금의 20%임 ⑥ 수료일로부터 8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본심사 완료 예정자 (단, 군복무 등 기타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공개발표를 통과한 자 ⑧ 학위과정 중 최근 5년 이내에 공인학술지에 논문 발표실적이 100%이상인 자 ※ 저자의 소속이 (경기대학교 대학원 ○○학과)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마.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정)

- 석사학위과정 : 1학기 - 6월중 2학기 - 12월중
- 박사학위과정 : 1학기 - 6월중 2학기 - 12월중

바. 논문심사위원

- 석사학위 논문 : 3인 - 박사학위 논문 : 5인(외부 인사 2인 이상 3인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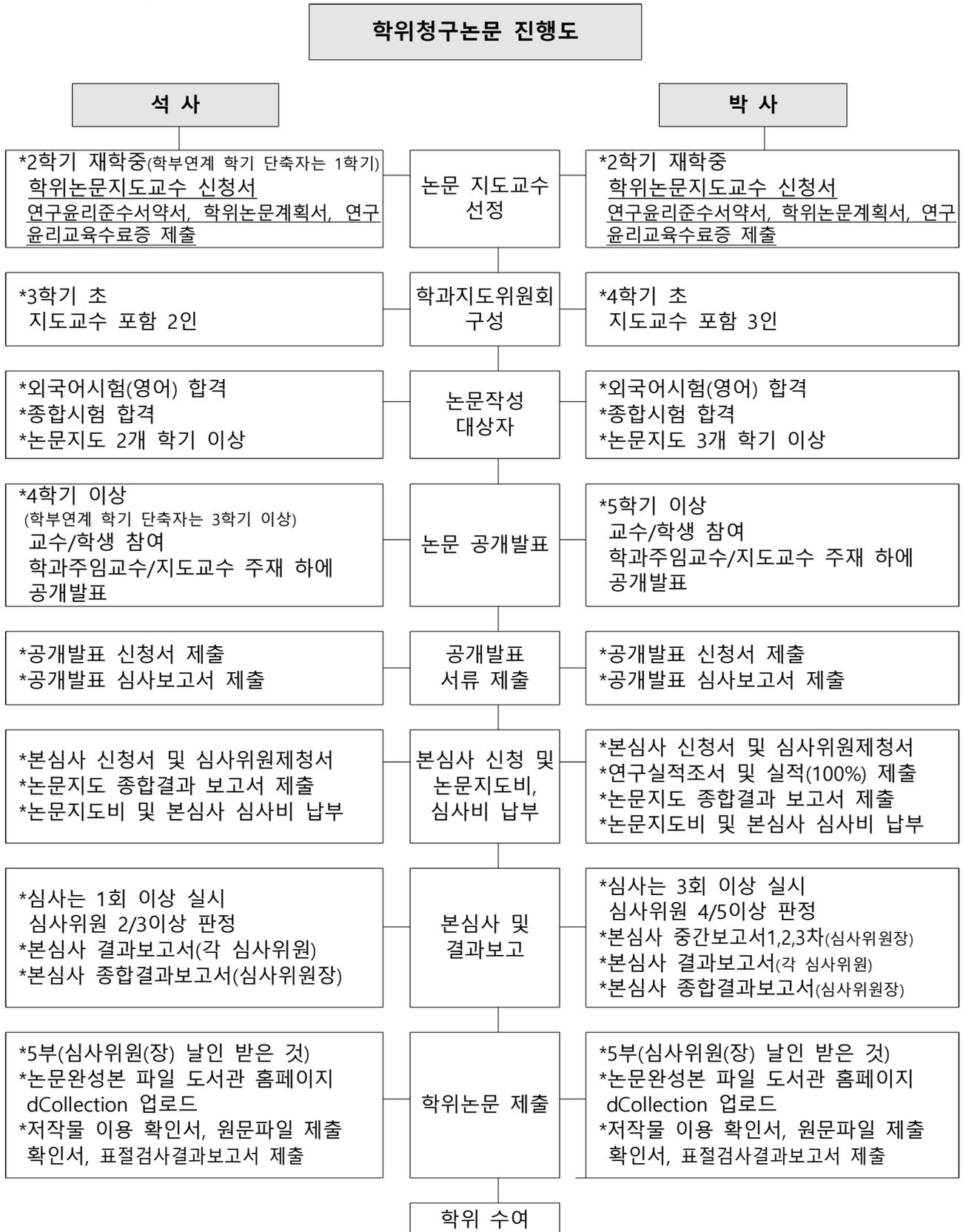
사. 학위논문 규격 및 인쇄양식 : '석·박사 학위논문 양식' 참조

아. 학위청구 논문 작성 관련 제출서류

석 사 학 위 과 정	구 분	박 사 학 위 과 정
<p>[공개발표신청 및 결과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신청서 -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심사보고서 (학과 주임교수포함,각 심사위원 심사보고서 제출) (학과 주임교수-심사종합결과보고 제출) 	<p>공 개 발 표</p>	<p>[공개발표신청 및 결과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신청서 -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심사보고서 (학과 주임교수포함,각 심사위원 심사보고서 제출) (학과 주임교수-심사종합결과보고 제출)
<p>[본심사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신청서 및 심사위원추천서 		<p>본심사</p>
<p>[본심사 심사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비 : 소정 금액 - 은행명 : 신한은행 - 예금주 : 경기대학교 대학원 - 계좌번호 : 100-022-277624 <p>(반드시 학과이름 앞두자와 학생이름으로 입금) 예) 국문학과 홍길동 → 국문홍길동</p>	<p>인쇄본 제출</p>	
<p>[본심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 논문 본심사 결과보고서(각 심사위원3인) - 석사 논문 본심사 종합결과보고서(심사위원장) 		<p>인쇄본 제출</p>
<p>[최종 논문 인쇄본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논문 인쇄본 5부 - 논문 완성본 파일 도서관 홈페이지dCollection 업로드 - 저작물 이용허락서, 원문파일 제출 확인서, 표절 검사결과 보고서제출 	<p>인쇄본 제출</p>	

☞ 논문제작과 관련된 사항은 교학팀(031-249-906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위논문 진행 절차



※ 논문심사 관련 제출서류는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심사 진행이 이루어짐.

차.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시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공통	1. 원문파일 제출 확인서 2. 저작물 이용 확인서 3. 완성본 학위논문 석사·박사 5부(인준서 원본 1부, 칼라복사 4부) 4. 표절검사결과보고서

카. 논문 작성 시 참고문헌관리도구 (RefWorks) 사용 안내

1) Refworks 주요기능

① 레퍼런스 및 문헌 저장 관리

- science direct, riss, ndsl, google scholar 등 다양한 학술 db 및 전자저널에서 자료 검색 후 레퍼런스 중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레퍼런스를 refworks 에 저장하여 관리
- 폴더생성을 통해 레퍼런스를 체계적으로 관리
- 폴더 공유로 동료 연구자와 레퍼런스 공유
- "인용보기" 기능을 통한 레퍼런스 정보 확인

② 참고 문헌 리스트 생성

- 4,500 여종의 출력스타일을 활용하여 참고문헌 리스트 생성
- write cite 프로그램 : ms word 와 연동하여 인용 각주 참고문헌 리스트 생성
- google doc 및 microsoft word 2016 의 store 추가기능을 통해 인용 각주 참고문헌 리스트 생성

2) 이용방법

- 1)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학술데이터베이스(해외) - RefWorks 선택
- 2) 계정 생성 (본인 계정 최초 1회 생성) 또는 생성 계정으로 로그인
 - * 계정은 본교 이메일(OOOO@kyonggi.ac.kr)로만 생성 가능함
- 3) RefWorks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이용(교내외 구분없음)
- 4) 상세 안내는 붙임자료 참조

3) 기타

- 이용안내 동영상 URL : https://blog.naver.com/proquest_korea/222159734205
- 세부 안내사항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공지 및 자료실 → 자료실 → 글번호 6743번 '참고문헌관리도구(RefWorks) 도입에 따른 이용 안내' 게시글 참조

5. 대학원 장학금

장학명	감면금액	선발조건
대학원장장학금	진·성·애	- 대학(원)발전 또는 사회공익증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연구원장장학금	등록금 전액	- 석·박사학위과정 신입생 중 연구원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본교직원 및 교직원자녀장학금*	직원: 등록금 전액 자녀: 등록금의 50%	- 본교의 정규직에 재직 중인 직원 - 본교의 정규직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로 석사과정에 한하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학부연계장학금*	등록금의 50% (입학학기)	- 석사학위과정 신입생으로서 본교 학사학위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의 과목을 2과목(6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단, 한 학기 단축 신청자 제외)
학·석사연계장학금	입학금 및 학기단축	- 학·석사연계과정을 지원, 이수한 후 입학한 자
공로장학금	공로(A)-2,500,000원 공로(B)-2,000,000원 공로(C)-1,500,000원	-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큰 자로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연구장려장학금	최대 200만원까지	- 석·박사과정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장학금*	등록금의 20% (매학기 신청)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심사 후 선발)
고위공직자장학금*	등록금의 50% (첫학기에 한함.)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심사 후 선발)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등록금의 20%, 40%, 50% 차등지급	- TOPIK 4급(예체능계열 3급) : 20% - TOPIK 5급 : 40% - TOPIK 6급 : 50%
동문장학금	등록금의 50% (첫학기에 한함)	- 본교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단, 본교 학점은행제 졸업생은 등록금의 30%), 장학금 이중수혜 제한

- 위 장학금 중 (*)에 해당되는 장학금은 장학금신청서(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및 구비서류를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만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가. 직전 학기 성적의 평점 평균이 3.5점 미만인 학생(정원외 외국인 포함)
 - 나. 장학생에 선발된 학기의 미등록 휴학생
 - 다.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장학금 수혜자(지정외부장학금 수혜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대학원 장학금 및 장학금 지급 기준은 학칙개정 또는 대학원 운영정책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학원 홈페이지 장학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원장학생 선발 및 의무사항 ◁

1. 연구원장학생 선발

내 용	시 기	대 상	제출서류
지도교수 선정	매년 10월 초	교수(신청자)	연구원장학생 지도교수 신청서
연구원장학생 추천·선발	전기 합격자발표 직후	가. 경제적 사정 곤란자 나.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본교 졸업(예정)자	1. 연구원장학생 추천서 1부(지도교수 작성) 2. 연구계획서 1부(지도교수작성) 3. 연구원장학생 서약서 1부(지도교수·학생 작성) 4.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학생)

2. 연구원장학생 장학금 지원 자격조건

가. [성적] : 매학기 성적 3.5 이상 유지(본교 장학금 지급 기본 요건)

나. [학기] : <석사> 4학기 이내 (학부연계과정 학기 단축자는 3학기 이내 정규학기)
<박사> 5학기 이내 (정규학기)

다. [신분] : **경제적 사정 곤란자로** 재학기간 동안 전일제 학생 신분 유지

- ▶ 전일제 학생이란 미취업 상태의 풀타임(full-time) 학생을 말하며, 전일제 신분 확인을 위하여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eb(<http://www.4insure.or.kr>)에서 가입내역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

3. 연구원장학생 의무사항

가. 연구실적보고 및 중간보고

연구원장학생은 매 학기 연구와 관련된 진행사항을 대학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제 출 서 류
제출 학기에 졸업 대상이 아닌 경우	연구실적물이 있는 경우 [A]	1. 자격확인 관련서류 : 전일제신분 확인을 위한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1부. 2. 연구실적 관련서류 가. 연구실적보고서 1부 나. 게재 논문 별쇄본 및 논문표지, 목차 사본 각 1부. 나-1. 전자저널의 경우 : 해당논문 게재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및 목차화면 출력본 각 1부, 해당 학회지 메인 화면 출력본 1부
	연구실적물이 없는 경우	1. 자격확인 관련서류 : 전일제신분 확인을 위한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1부. 2. 연구실적 관련서류 : 중간보고서
제출 학기에 졸업 대상인 경우	연구실적물이 있는 경우	1. 자격확인 관련서류 : 전일제신분 확인을 위한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1부. 2. 연구실적 관련서류 : [A]와 동일 (논문게재 예정인 경우 논문게재예정증명서 우선 제출)
	연구실적물이 없는 경우	1. 자격확인 관련서류 : 전일제신분 확인을 위한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1부. 2. 연구실적 관련서류 : 중간보고서, 연장신청서 (연구실적 점수를 달성한 경우 위 1. 서류만 제출)

나. 연구실적물 제출

각 학위과정 수업연한기간 내에 지도교수와 2인 이상 공저로 규정된 연구업적 점수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해야 하며, 연구실적물은 특A급, 저명, SCOPUS 국제학술지 또는 A급 국내학술지에 게재되어야 함.

㉓ 인문·사회·예체능계		㉔ 이·공계	
석사과정	28점	석사과정	40점
박사과정	84점	박사과정	56점

게재된 논문에는 반드시 "본 연구는 20××학년도 (논문게재년도) 경기대학교 대학원 연구원장학생 장학금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또는 "This work was supported by Kyonggi University's Graduate Research Assistantship 20××." 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 단, 이공계 박사과정의 경우, A급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실적물은 제외**

4. 연구원장학생 유의사항

- 가. **연구원장학생 의무사항 불이행 시 연구원장학생 자격이 취소되며, 연구원장학생은 지도교수와 연대하여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즉시 본교에 반납하여야 함.**
- 나. 연구원장학생이 휴학, 자원퇴학, 제적, 개인사유로 포기하는 경우 연구원장학생 자격이 상실됨.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건강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사유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개정 2013.03.01)
- 다. 연구실적물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도교수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1학기씩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학위취득이 보류됨. 2학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물 제출 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1학기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연구원장학생의 지도교수는 향후 2년간 연구원장학생 지도교수 선발에 지원할 수 없음.
 - ※ 연장신청 시 제출서류: 연장신청서, 사유서,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연구중간보고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 라. 2인 이상의 연구원장학생이 공저자에 포함된 논문의 경우 연구실적은 1개 논문 당 1명만 인정되며, 교내 연구과제 연구결과물은 연구원장학생 연구실적물로 중복 제출할 수 없음.
- 마. 연구원 장학생 장학금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실적물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구실적물로 인정 불가함.
- 바. 연구원장학생의 연구실적 논문은 해당 학위과정 청구 논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대학원에서 지원하는 <연구논문 학술지게재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사. 교내 장학금 이중수혜는 불가함.
- 아. **박사과정의 연구원장학생은 6시간 이하의 강의를 허용하며, 이 경우 시수가 명시된 [경력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참고] 연구업적 점수 환산표

논문구분	
국제 특A급 학술지	CELL, NATURE, SCIENCE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국제저명학술지	A&HCI, SCI, SCIE, SSCI에 등재된 학술지의 논문 (국내 학술지가 등재된 경우 포함)
국내 A급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의 논문

구분	SCOPUS 문서 유형(Document Type)	문서정의	변경사항
정규논문으로 인정되는 문서(4종)	Article	Peer review 저널에 발표된 원 논문	
	Review	발표된 아티클에 대한 중요한 리뷰	
	Erratum(조건부)*	이전 발표된 논문의 오류정정, 철회	인정→조건부인정
	Book Chapter(조건부)**	도서나 저널시리즈의 Chapter	불인정→조건부인정
불인정 문서(7종)	Article-in Press	인쇄출판 전 게재예정 논문	
	Conference Review	Conference paper에 대한 리뷰	
	Conference paper	컨퍼런스에서 원 논문에 대한 발표	
	Short-survey	Original article에 대한 짧은 리뷰	
	Editorial	몇 건의 논문 요약, 편집자의 의견	인정→불인정
	Letter	교신저자 등에 쓴 편지	인정→불인정
	Note	Note, Discussion, Commentary(논평)	인정→불인정

※ Erratum 이전의 원 논문이 정규 논문으로 기 등록되어 있으면, Erratum은 정규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음.
 ※ Scopus저널목록에서 검색되고, 동료심사를 거쳤으며, 저널형식(Vol. no. 정기발행)을 갖춘 Book Chapter는 정규 논문으로 인정
 ※ 문서유형 확인방법 : RISS - 회원가입(개별) - 논문검색 - Document Type 확인

국제학술지			
▶국제학술지특A급			
인문·사회·예체능계		이·공계	
2인 연구(70%)	210점	2인 연구(70%)	210점
3인 연구(50%)	150점	3인 연구(50%)	150점
4인 이상 연구(30%)	90점	4인 이상 연구(30%)	90점
▶국제학술지 저명			
인문·사회·예체능계		이·공계	
2인 연구(70%)	70점	2인 연구(70%)	56점
3인 연구(50%)	50점	3인 연구(50%)	40점
4인 이상 연구(30%)	30점	4인 이상 연구(30%)	24점
▶국제학술지SCOPUS			
인문·사회·예체능계		이·공계	
2인 연구(70%)	28점	2인 연구(70%)	28점
3인 연구(50%)	20점	3인 연구(50%)	20점
4인 이상 연구(30%)	12점	4인 이상 연구(30%)	12점
국내학술지			
▶국내학술지 A급			
인문·사회·예체능계		이·공계	
2인 연구(70%)	28점	2인 연구(70%)	28점
3인 연구(50%)	20점	3인 연구(50%)	20점
4인 이상 연구(30%)	12점	4인 이상 연구(30%)	12점

6. 대학원 학술연구활동 지원

가. 목적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논문 및 연구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

나. 세부지원 내용

구 분	정 의	지원액	횟수
학술행사/학과세미나	논문발표자가 5명(교외인사 1명 포함) 이상이어야 하고 참가인원 40명 이상의 학술행사	500,000원	매학기 1회 (택1)
	논문발표자 3명(본교전임교원 1명 포함) 이상이어야 하고 참가인원 20명 이상의 계열별 또는 학과행사	300,000원	
	학과 대학원생 2인 이상의 공통 주제논문 발표 및 토론을 위한 세미나	100,000원	

다. 신청기간 및 제출 서류

- ▷ 1학기 : 매년 03. 01 ~ 07. 31
- ▷ 2학기 : 매년 08. 01 ~ 익년도 01. 31

	신청서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행사개최일 1개월 전부터 개최일 전까지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서류	① 학술행사/학과세미나 개최 지원신청서 ② 학술행사/학과세미나 개최 계획서 ③ 통장사본 1부(반드시 학과명의 통장)	① 학술행사/학과세미나 개최 결과보고서 ② 학술행사/학과세미나 지원금 정산서 ③ 학술행사/학과세미나 초청장 1부 ④ 학술행사/학과세미나 자료집 1부 ⑤ 행사제목(명칭) 및 날짜가 포함된 현장 사진 3매

라. 비 고

- 1)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2) 지원경비로 강사료 지급을 할 수 없음.
- 3) 영수증 첨부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한함.
 - 법인카드 이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명백한 경우,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명세서 허용
 - 지급 금액에 상관없이 간이영수증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 4) 관련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 5) 지원 제외 사항
 - 학위논문 관련 행사
 - 교비지원을 받은 행사(이중신청금지)

7. 대학원생 연구논문 학술지 게재 장려금 지원

가. 목적

대학원생들의 다양한 학술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내외 유명 학술지 논문게재에 대하여 소정의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나. 신청기간

▷1학기 : 매년 03. 01 ~ 07. 31

▷2학기 : 매년 08. 01 ~ 익년도 01. 31

*본 장려금은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관계로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다. 지원대상

▷해당 학기 기간에 아래의 연구 실적물이 있는 재학생(수료생 불가)

라. 지원기준

	학술지게재 연구논문
지원기준	▶ 산정 기준에 의함 ① 국제 특A급 학술지 : 100만원/편당 - Science, Nature, Cell ② 국제저명학술지 : 50만원/편당 - SCI, SCIE, SSCI, A&HCI ③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SCOPUS 등재 학술지 : 30만원/편당
지원한도	- 매학기 1인당 1회 신청 및 1개의 논문당 1명만 인정
제출서류	① 학술지게재 연구논문 지원비 신청서 ② 논문집 겉표지, 목차 사본 각 1부 ③ 별쇄본 1부
장려금 산출 기준	- 주 저 자 : [장려금액/(n-지도교수) + 1] × 2 - 공동저자 : [장려금액/(n-지도교수) + 1] ※ 주저자 인정 기준 ㉠ 교신저자인 경우 ㉡ 교신저자(주저자)에대한 표기가 없으면 저자 기재순에서 첫번째 저자인 경우 ㉢ 주저자임을 증빙하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증빙이 된 경우 ※ 석·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등재한 논문의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지원 제외사항	- 교내학술연구비 등 교비지원을 받은 실적물 - 교외과제 중 교비대응자금을 지원 받은 실적물 - 연구원장학생 연구 실적물 - 6인 이상 공저 논문
기타	▶ 저자의 소속이 (경기대학교 대학원○○학과)로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논문게재가 완료되어 Volume & Issue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8. 학생증 발급

가. 학생증(ID카드 - 직불카드겸용)

1) 주요기능

- 가) 학생증 : 경기대학교 학생신분 확인
- 나) 도서관 이용 : 도서관출입, 도서대출, 좌석관리시스템이용, 전자정보실이용
- 다) 교통카드 : u-Pass, EB 교통카드 충전(서울/경기)
- 라) 통합금융 IC : 체크카드+해외직불카드+금융IC카드
- 마) 제휴서비스이용

2) 발급 신청 방법

- 가) 발급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 나) 비 용 : 무료
- 다) 신청방법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공지 및 자료실 → '자료실' 메뉴 → '필독- 대학원 학생증 발급 안내' 게시글 참조
- 라) 교부장소
 - 서울캠퍼스 학생 : 신한은행 서대문 지점
 - 수원캠퍼스 학생 : 수원캠퍼스 일반대학원 교학팀 (종합강의동 106호)
- 마) 교부방법 : 발급 완료 시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 방문하여 수령
- 바) 소요기간 : 2~3주

3) 분실신고

- 학생증체크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시, 학교(도서관)와 신한카드사에 신고하여야 함
- 가) 신한은행 경기대학교 출장소 031-252-7182
신한카드 일반상담 1544-7000 / 승인·분실 1544-7200
- 나) 도서관 대출실 031-249-8859(타인 대출 금지를 위한 신고)

나. 모바일 학생증 안내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경기대학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모바일신분증 (모바일학생증으로 도서관 이용 및 대출 가능)

9. 제증명 발급

가. 제증명 자동발급기

1) 설치장소

- 수원캠퍼스 : 종합강의동 로비, 교육관 로비, 4강의동 로비, 복지관 1F 로비
- 서울캠퍼스 : 본관, 학생회관 로비

2) 증명서종류

- 재학, 성적, 졸업(예정), 제적, 수료(예정), 학적부

나. 인터넷 증명발급

1) 발급방법

- 대학원 홈페이지 → 빠른서비스바로가기 → '인터넷 증명발급' 클릭 → 로그인 → 학위과정 선택 → 증명서 종류 및 발급매수 선택 → 신청내역 및 수수료 확인 → 결제방식 선택(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 증명서 출력

2) 제증명 문의처

- 인터넷 제증명: ☎ 1644-2378
- 대학원 교학팀: ☎ 031-249-9061 ~ 5

10. 주차권 발급

가. 정기 주차권 발급 방법

- 학생증과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주차관리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함.
(학생증이 없는 경우 모바일학생증,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차량등록증은 본인 명이나 가족명만 가능(가족명의 차량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나. 요금 : 월 5,000원 / 1학기 20,000원

다. 주차관리소 업무시간 : 09:00 ~ 18:00(개강 후 첫주 동안은 ~ 20:00까지 연장 근무)

라. 주차관리소 위치 및 전화번호 : 정문관리실 031)241-2405

11.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 예비군 전입신고(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 신입생과 재학생 중 예비군 신분인 자(예비역, 보충역)는 아래기간 내에 학과별로 대원신고를 필해야 함.

가. 신입생

- 1) 신고기간 : 매 학기초
※ 대원신고 누락 시는 학생예비군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2) 신고장소 : 서울캠퍼스 직장예비군대대 또는 수원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
- 3) 지참물 : 등록금 납입영수증, 전역증(병역수첩) 또는 주민등록 초본, 필기구, 도장
- 4) 문의처 : 서울캠퍼스 직장예비군대대(02-390-5214)
수원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031-249-8821)

나. 재학생

전역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동사무소에 전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에 복학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등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14일 이내에 교내 예비군대대(서울교사), 예비군연대(수원교사)로 신고해야 함.

다. 군미필자

군 미필자가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재학 제한연령(석사 만 26세, 박사 만 27세)까지는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병역이 연기됨.(※휴학하여도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영장이 나오지 않음)

IV. 대학원 학칙

1. 총 칙
2. 입학, 전과 및 전공 변경
3. 등록·휴학·복학·자원퇴학 및 제적
4. 수업연한·교육과정·학점·성적 및 수료
5. 학 위 논 문
6. 학 위 수 여
7. 공개강좌·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8. 장학금, 학생지도 및 권리장전
9. 직 제
10. 위원회
11. 보 칙

경기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교에 설치한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다음과 같은 대학원을 둔다.

1. 대학원 (이하 다른 대학원과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이라 한다.)
2. 전문대학원 :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정치전문대학원, 관광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행정복지상담대학원, 교육대학원, 공학대학원, 예술대학원, 대체의학대학원, 한류문화대학원 (개정 2007.10.16., 2011.03.01., 2014.03.01., 2016.09.20., 2018.01.31., 2021.07.15.)

제3조 (설치과정)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 ②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는 석·박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통합과정의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 및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③ 각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 ④ 각 대학원은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 등을 둘 수 있다.
- ⑤ 각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4조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개정 2008.12.01, 2013.03.23)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개정 2011.07.01)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학과, 산업교육특별과정 또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의한 학과 운영규정 및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신설 2011.03.01., 개정 2017.02.13.)
- ④ 총장은 제1항에 규정된 대학원 총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원별로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 장 입학, 전과 및 전공변경

제5조 (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 (지원자격) 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전 항 이외에 각 대학원별 특별한 지원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7조 (입학지원 절차) 각 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 (편입학 및 재입학) ①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로 인하여 퇴학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 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의 2 (전과 및 전공변경) 전과 및 전공변경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전공변경을 불허한다.

[본조신설 2017.02.13.]

제 3 장 등록·휴학·복학·자원퇴학 및 제적

제10조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7.05.02.)

② 등록금은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신설 2017.05.0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신설 2017.05.0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12조 (수업연한 이후 등록) ① 수업연한 이후 학점취득이 필요한 자의 등록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1, 4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경우 수업연한 이후 선수과목만을 이수하기 위한 자의 등록은 1학점당 해당 학기 등록금의 5%를 등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10.04., 2018.01.31.)

③ 각 학위과정의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매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연구등록에 관한 등록금 책정 및 연구등록학기적용기간, 경과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내규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13조 (휴학)** 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②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하되 연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3개 학기, 박사과정은 5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병역 및 임신, 출산, 육아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휴학은 통산하여 2년(4학기) 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5.10.15., 2017.02.13.)
- ⑤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3항의 휴학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여 허락할 수 있다.

제14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원퇴학) 자원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원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

- 제16조 (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졸업예정 학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10.16)
 5. 질병 등 기타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제적 결의된 자
 6.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자
 7. 기타 품행이 불량하며 성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자

제 4 장 수업연한 · 교육과정 · 학점 · 성적 및 수료

- 제17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 3년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 ②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2년(4학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10.27., 2017.10.04)
- ③ 제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및 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과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은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과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재학연한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 또는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7조의 2(수업) 수업은 주간수업, 주말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집중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 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05.18., 2019.04.10.)
[본조신설 2017.02.13.]

제17조의 3(수업일수 및 학점당 이수시간)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 ③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에서 정한 수업일수보다 짧은 기간에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출석 등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8.05.18.]

제18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각 대학원에서 편성하는 교육과정에 의한다.(개정 2007.10.16)

제19조 (학사학위과정과의 연계) ①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학생이 각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에 6학점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일반대학원에서의 학점 취득은 학부학생 소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석사 전용 과목에 한한다.(개정 2007.10.16)

- ②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6학점까지 당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과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①항의 경우의 학생이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에는 각 대학원별 내규에 따라 학기를 단축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2 (학·석사연계과정) ①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03.01.]

제20조 (타 학과 교과목 수강)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과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승인하는 타 학과 또는 전공 교과목을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단 타 학과(전공) 교과목 초과 수강이 필요한 경우, 각 대학원 내규에 이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3.01)

제21조 (타 대학원 학점인정) ① 각 대학원 학생이 본교 또는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학과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학점은 각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인정 범위는 12학점 이내로 한다.

- ② 학점 교류 또는 공동학위, 복수학위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9.04.10.)

제22조 (편입학 및 재입학 학점인정) 편입학생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에서 각 학위과정별로 18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재입학생은 재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3.01)

제23조 (학기당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의 4학기제 학생은 매 학기 9학점, 5학기제 학생은 매 학기 7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으며, 논문학점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각 대학원이 학기당 이수학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 ② 박사학위과정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07.01.05)
- ③ 각 대학원의 과정별 학기당 이수학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4조 (이수학점 및 수료) ① 석사학위과정 수료인정학점은 24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의 수료인정학점은 60학점(석사학위과정 24학점 포함)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인정학점과 박사학위과정 수료인정학점은 각각 24학점 이상과 60학점(석사과정 포함) 이상으로 한다.

- ② <삭제 2006.09.27>
- ③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선수과목 및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논문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07.10.16)
- ④ 각 대학원별로 이수학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25조 (선수과목 이수) ① 타 전공 입학생의 선수과목 이수는 각 대학원내규로 정한다. 다만, 선수과목의 학점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6조 (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되, C학점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한다.

등급	점 수	평 점
A ⁺	95 ~ 100	4.5
A	90 ~ 94	4.0
B ⁺	85 ~ 89	3.5
B	80 ~ 84	3.0
C ⁺	75 ~ 79	2.5
C	70 ~ 74	2.0
F	69 이하	0
I (미완)	-	0
P (통과)	-	0
N (미통과)	-	0

- ② 성적제출 마감일까지 성적을 확정할 수 없는 교과목은 잠정적으로 미완 I(Incomplete)의 성적을 부과하며, 성적 정정 기간까지 성적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교과목의 학점은 F로 처리한다.
- ③ 선수과목 및 대학간 협약에 의한 해당과목에 대하여는 통과는 P(Pass), 미통과는 N(Not Pass)으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않는다.(개정 2019.04.10.)

제27조 (학점인정일수) ①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 교수는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7.02.13.)

1. 친족의 사망
 -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5일
 - 나. 형제자매, 자녀 : 3일
 - 다. 부모의 형제 및 그의 배우자 : 3일
2. 본인의 결혼 : 5일

3. 입원치료 : 2주
4. 병무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5. 대회, 연수, 교육실습 등의 참가 : 해당 기간
6. 마지막 학기 등록자 중 취업(인턴, 국비교육 등)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
7. 기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 5 장 학 위 논 문

제28조 (자격시험) ①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 ②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29조 (논문계획서 제출 및 논문지도교수 배정) 각 학위 과정의 학생은 3학기 시작 전에 학위청구논문작성 계획서와 희망논문지도교수 신청서를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단 대체의학대학원은 내규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30조 (학위논문 제출) ①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7.10.16)

- ② 학위논문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 (학위논문심사)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지도교수의 제청을 받아 학과 또는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 ② 심사의 통과는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전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6 장 학 위 수 여

제32조 (학위수여) ① 학위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심사에 통과된 자에 대하여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논문심사 이외의 방법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문의 특성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각 대학원이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④ 타 대학과의 협약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04.10.)

제33조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①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개정 2018.10.01)

-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학위를 받을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개정 2018.10.01)
- ③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본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 ④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대학원 내규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8.10.01)

제34조 (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학위의 취득 과정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 (학위종별 및 학위기)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으며, 학위기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개정 2008.12.01)

제36조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공개강좌·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제37조 (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은 재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공개강좌를 개설할 때 각 대학원장이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 다만, 공개강좌의 특성상 별도의 운영형태가 필요한 경우 각 대학원 내규에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8조 (연구생)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08.12.01, 2013.3.23)
- ② 연구생은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③ 연구생으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 (외국인 학생) ①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정원 외로 입학 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외국인 학생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 8 장 장학금, 학생지도 및 권리장전

제40조 (장학금) ①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는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41조 (포상) 총장 또는 각 대학원장은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7.10.16)

제42조 (징계)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 또는 근로봉사,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42조 2 (권리장전) ① 대학원은 대학원생들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권리장전을 둔다.

②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6.09.20.]

제 9 장 직제

제43조 (직제) 각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부원장, 학과 및 전공 주임교수를 둔다.(개정 2009.10.27)

제44조 (학과·전공주임교수) 각 학과 또는 주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각 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이를 임명한다. 단,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경우 해당 대학원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전임교원(석좌, 특임, 초빙)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9.02.26.)

제 10 장 위원회

제45조 (설치) 본교에 설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에는 대학원위원회, 대학원운영위원회, 학과·전공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6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 (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위원회는 전체 대학원장(일반, 전문, 특수), 기획처장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이 되며, 간사는 일반대학원 교학팀장이 되어 위원회 사무를 관장한다.

③ 대학원위원회에서는 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48조 (대학원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교 내에 설치된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각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며, 제2호, 제5호, 제7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12.01)

1.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01)
2.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3. 학과 및 전공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4.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6. 대학원의 설치·폐지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7.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각 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방법과 운영절차는 해당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9조 (학과·전공운영위원회) 각 대학원의 각 학과 또는 전공에 학과·전공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1 장 보 칙

제50조 (학칙 제·개정) 이 학칙과 시행세칙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학원에서 개정안을 입안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개정 2012.09.01)

제51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2조 (각 대학원 내규의 제·개정) 각 대학원은 당해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운영의 세부사항에 관한 내규를 제·개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01, 2013.12.01)

제53조 (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기대학교 학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학칙의 폐지) 본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일반대학원, 건축전문대학원, 정치전문대학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관광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학칙은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불구하고 본 학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각 대학원별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전공명칭은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행정대학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변경된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 (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위종별 변경은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의 관광서비스경영전공 및 외식컨설팅전공은 이 개정학칙 시행전 재적생의 졸업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이 개정학칙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37조의 단서조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학칙 별표1, 별표2, 별표3의 학과·전공의 신설·폐지·명칭변경 및 입학정원의 증감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학과·전공의 신설·폐지·명칭변경의 경우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행정대학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변경된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③ 조형대학원과 전통예술대학원을 통합하여 설치되는 미술·디자인대학원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통합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④ 이 개정학칙 제19조제1항의 단서조항은 이 학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전문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건축전문대학원은 이 개정학칙 시행전 재적생의 졸업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통합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제17조의 수업연한 단축은 특수대학원을 제외하고는 2007학년도 이후부터 적용하되, 각 대학원별 수업연한의 단축에 따른 적용시기 및 이에 따른 세부 시행방침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이 학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명칭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변경된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원 및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건설·산업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일반대학원의 컴퓨터과학과,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의 서비스경영전공, 서비스창업 및 컨설팅경영전공, 보석마케팅 및 디자인경영전공, 관광전문대학원의 문화관광콘텐츠·리조트개발전공, 행정대학원의 아동·가족복지전공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행정대학원의 인적자원개발전공, 산업정보대학원의 산업경영전공, 신소재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의학생물학전공, 정보통신·미디어전공, 인터넷소프트웨어전공, 국제·문화대학원의 국제금융공학과, 한국학과는 2008학년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복학하는 경우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인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신설된 일반대학원의 상담교육학과, 대체의학과, 공연예술학과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일반대학원의 생명과학과, 환경에너지시스템공학과, 산업보안학과, 관광전문대학원의 문화관광콘텐츠·리조트개발전공, 교육대학원의 교육CEO인적자원개발전공, 평생다문화교육전공, 미술·디자인대학원의 미술치료전공, 산업디자인전공, 도예전공, 서예·문자예술전공, 엔터테인먼트학과, 특수분장전공, 문화예술대학원의 연극학과, 대체의학대학원의 족부치료전공, 사회복지대학원의 아동가족복지학전공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일반대학원의 게임웨어학과, 환경정책학과, 디지털금융학과, 가상현실공학과, 미술·디자인대학원의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문인화전공은 2009학년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복학하는 경우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인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불어불문학과”는 프랑스어문학과로, “산업재산권학과”는 “지식재산학과”로, “회계학과”는 “회계세무학과”로, “산업공학과”는 “산업경영공학과”로, “재료공학과”는 “신소재공학과”로 한다.

② 이 개정학칙 시행 전 불어불문학과, 산업재산권학과, 회계학과, 산업공학과, 재료공학과 석사학위과정은 2010학년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며, 회계학과, 산업공학과, 재료공학과 박사학위과정은 2011학년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신설된 일반대학원의 건축학과, 건축설계학과, 스포츠경영학과, 문화예술대학원의 음악치료학과, 대체의학대학원의 운동치료전공, 건설·산업대학원의 반도체·디스플레이전공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일반대학원의 언론미디어 학과는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축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건축대학원은 이 개정학칙 시행전 재적생의 졸업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시행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5조 (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교육대학원의 화공·섬유교육전공, 윤리교육전공, 관광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 대체의학대학원의 족부치료전공, 미술·디자인대학원의 판화전공은 2010학년도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재입학하는 경우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인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스포츠과학대학원 무용공연예술 전공은 이 개정 학칙 시행전 재적생이 졸업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시행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행정대학원의 도시 및 지방자치 행정전공, 지방의회전공, 교육대학원의 일어전공, 물리전공, 화학전공, 전자계산교육전공, 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 건설교육전공, 기계·금속교육전공, 문화예술대학원의 연극교육학과, 미술·디자인대학원의 한국화전공, 시각정보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은 이 개정 학칙 시행전 재적생이 졸업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시행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원 통합 및 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스포츠과학대학원과 통합된 행정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미술·디자인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대체의학대학원의 각 학과(전공) 및 교육대학원의 폐지된 전공은 재적생의 졸업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4. 6. 24)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일반대학원 관광이벤트국제회의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는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4. 10. 07)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신설된 일반대학원의 언론미디어학과는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과·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서비스컨설팅전공, 대체의학대학원 심리치료전공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학위종별 변경은 2016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학과·전공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교육대학원의 교육CEO인적자원개발전공은 이 개정 학칙 시행전 재적생이 졸업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시행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5. 10. 15)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학과·전공 신설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신설된 대체의학대학원의 문학치료전공, 임상치유요가전공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폐지된 복지임상치료전공은 이 개정학칙 시행 전 재적생의 졸업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시행 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 3 조 (학과·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건설·산업대학원 건축·안전공학 전공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 4 조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13조 제4항은 2015년 10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6. 09. 20)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특례조치) ①서울캠퍼스 석사과정에 편제되어 있는 국어국문학과, 문

예창작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유아교육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정보호학과, 청소년학과, 범죄학과, 경제학과, 응용정보통계학과, 지식재산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세무학과, 경영정보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물공학과, 컴퓨터과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도시·교통공학과, 화학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서양화학, 한국화학, 환경조각학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경영학과, 레저스포츠학과, 경호보안학과, 범죄심리학과, 교육정책학과, 상담학과, 의학물리학과, 산업보안학과, 생명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는 재학생의 수료시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서울캠퍼스로 입학한 자가 해당학년에 복학, 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원캠퍼스의 동일학과로 복학, 재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울캠퍼스 박사과정에 편제되어 있는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유아교육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정보호학과, 청소년학과, 범죄학과, 경제학과, 응용정보통계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세무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물공학과, 컴퓨터과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도시·교통공학과, 화학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경영학과, 레저스포츠학과, 경호보안학과, 범죄심리학과, 교육정책학과, 상담학과, 의학물리학과, 산업보안학과, 생명공학과, 도시방재학과, 산업디자인학과는 재학생의 수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서울캠퍼스로 입학한 자가 해당학년에 복학, 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원캠퍼스의 동일학과로 복학, 재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서울캠퍼스로 입학한 석사 및 박사 수료자가 연구등록 할 수 없는 경우 수원캠퍼스 동일학과로 연구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공학대학원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건설산업대학원은 이 개정 학칙 시행 전 재적생이 졸업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4조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일반대학원 미디어영상학과 및 예술대학원 서예학전공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일반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영화영상학과, 건축설계학과 및 건설산업대학원 지리·공간정보공학전공은 재적생의 졸업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6조 (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신설된 공학대학원 건설재료공학전공, 첨단기계·자동차공학전공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7조 (대학원생 권리장전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42조의 2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7. 02. 13)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위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외식조리관리학과 및 외식산업경영전공 학위명칭 변경에 따른 적용은 2016학년도 전기(2017년 2월 졸업) 졸업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05. 0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신설된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글로벌비즈니스학과, 박사과정 글로벌뮤직학과, 글로벌파인아트학과, 건설안전학과 및 행정·사회복지대학원의 금융·부동산자산관리전공과 행정법률서비스전공은 2017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일반대학원의 교육학과는 2017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교육대학원의 상업교육전공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행정·사회복지대학원의 부동산정책전공은 이 개정 학칙 시행 전 재적생이 졸업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시행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7. 10. 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대학원(수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신설된 예술대학원(수원)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일반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경영정보학과, 서양화학과, 한국화학과, 환경조각학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예술대학원 문화컨텐츠학과 동양철학전공은 이 개정학칙 시행전 재적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시행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4조(학과·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행정·사회복지대학원 행정학과 소방재난안전교육·행정전공, 예술대학원 독서지도학과, 공연예술학과 댄스씨어터전공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5조(학과·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신설된 일반대학원의 미술학과, 스포츠과학과, 행정·사회복지대학원의 동양문화학과 동양문화전공, 예술대학원 K-culture 융합학과 K-pop 전공, K-culture management전공, 공연예술학과 동작분석심리학전공, 인터미디어학과 디지털영상전공, 프로덕션전공, 미술학과 아동미술지도전공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과조치) 제12조 2항의 시행은 2018학년도 미졸업자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01. 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한류문화대학원 신설은 2019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하고, 제4조 공학대학원 도시재생전공의 명칭변경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9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된 한류문화대학원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예술대학원(서울)은 이 개정 학칙 시행 전 재적생이 졸업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조신설 2018.11.06.)

부 칙 (개정 2018. 05. 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2, 제17조의 3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신설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주류산업경영학과, 외국인을위한한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주류산업경영학과, 외국인을위한한국어교육학과,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및 예술대학원 K-뷰티 전공은 2018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8. 10. 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33조의 시행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신설된 일반대학원의 동양문화학과 박사과정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공학대학원 건설재료·시공공학전공, 반도체공학전공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8. 11. 0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생명공학과, 예술대학원(수원) 미술학과 미술경영전공, 디자인·공예학과 시각디자인전공은 이 개정 학칙 시행 전 재적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시행 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학과·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대체의학대학원 대체의학과 상담치료전공, 예술대학원(수원) 디자인·공예학과 시각·금속디자인전공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9. 02. 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04. 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대체의학대학원 대체의학과 미용치료전공에서 뷰티웰니스전공으로의 명칭변경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신설된 일반대학원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나노전자융합공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대체의학대학원 대체의학과 동물매개자연치유전공 석사과정은 2019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대체의학대학원 대체 의학과 뷰티웰니스전공 석사과정은 2020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일반대학원의 미디어영상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물리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전자공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산업보안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대체의학대학원 대체의학과 심리상담치료전공 석사과정은 이 개정 학칙 시행 전 재적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시행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9. 05. 0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신설된 교육대학원 소프트웨어교육전공은 2020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은 이 개정 학칙 시행 전 재적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시행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9. 11. 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신설된 행정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과정은 2020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신설된 공학대학원 프롭테크전공 과정은 2020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한류문화대학원 K-culture융합학과 공연음악전공은 2020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공학대학원 소방방재전공, 건축공학전공, 서비스융합디자인공학전공 과정은 2020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공공커뮤니케이션전공, 행정법률서비스전공은 재적생이 졸업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②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한류문화대학원 K-드라마전공은 재적생이 졸업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③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공학대학원 반도체공학전공은 재적생이 졸업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 05. 14)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 06. 29)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01. 14)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

부 칙 (개정 2021. 03. 22)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신설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글로벌파인아트학과 신입생은 2021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일반대학원 산업시스템공학과는 2022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상담교육전공과 소프트웨어교육전공은 이 개정 학칙 시행 전 재적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시행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1. 07. 1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행정복지상담대학원은 2022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행정·사회복지대학원은 이 개정 학칙 시행 전 재적생이 졸업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1. 11. 26)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신설된 일반대학원 SW안전보안학과는 2023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개정 2008.09.01., 2008.12.01., 2009.10.27., 2016.09.20., 2017.02.13. 2017.05.02., 2017.10.04., 2018.01.31., 2018.05.18., 2018.11.06., 2019.04.10., 2020.05.14., 2021.03.22., 2021.11.26.)

대학원	과 정	캠퍼스 구분	입학 정원	학 과	학위종별	학 과	학위종별
일반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서울	90	관광경영학과	관광학석사	애니메이션학과	영상예술학석사
				여가관광개발학과	관광학석사	디지털음악학과	음악예술학석사
				호텔경영학과	관광학석사	* e-비즈니스학과	경영학석사
				외식조리관리학과	외식경영학석사	* 직업학과	직업학석사
				관광이벤트국제회의학과	관광학석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석사
				연기학과	공연예술학석사	* 주류산업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수 원	150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컴퓨터학과	이학석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독어독문학과	문학석사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사학과	문학석사	건축학과	건축학석사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석사	환경에너지공학과	공학석사
				유아교육학과	교육학석사	산업시스템공학과	공학석사
				법학과	법학석사	신소재공학과	공학석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도시·교통공학과	공학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화학공학과	공학석사
				범죄교정학과	교정학석사	* 나노전자융합공학과	공학석사
				청소년학과	청소년학석사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범죄학과	범죄학석사	경호보안학과	경호보안학석사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스포츠학과	체육학석사
				응용정보통계학과	통계학석사	* 미술학과	미술학석사
				지식재산학과	지식재산학석사	* 범죄심리학과	심리학석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무역학과	경영학석사	* 상담학과	상담학석사
				회계세무학과	경영학석사	* 의학물리학과	이학석사
				수학과	이학석사	*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화학과	이학석사	*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국제경영학석사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 외국인유학위한국어교육학과	문학석사
				식품생물공학과	이학석사	* 공공안전빅데이터심리분석학과	공공안전빅데이터 심리학 석사
				* 글로벌파인아트학과	미술학석사	SW안전보안학과	SW안전보안공학석사

* 표 학과는 학과간 연계과정임.

(개정 2011.03.01, 2011.07.01, 2012.03.01., 2013.03.01, 2014.09.01., 2014.10.07., 2016.09.20., 2017.02.13., 2017.05.02., 2017.10.04., 2018.01.31., 2018.05.18., 2018.10.01., 2018.11.06., 2019.04.10., 2020.05.14., 2021.03.22., 2021.11.26.)

대학원	과 정	캠퍼스 구분	입학 정원	학 과	학위종별	학 과	학위종별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서울	64	관광경영학과	관광학박사	* e-비즈니스학과	경영학박사
				여가관광개발학과	관광학박사	* 직업학과	직업학박사
				호텔경영학과	관광학박사	* 대체의학과	대체의학박사
				외식조리관리학과	외식경영학박사	* 영상예술학과	영상예술학박사
				관광이벤트국제회의학과	관광학박사	* 공연예술학과	공연예술학박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박사	* 글로벌뮤직학과	음악학박사
				* 주류산업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동양문화학과	철학박사
		수원	102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토목공학과	공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박사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사학과	문학박사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박사	환경에너지공학과	공학박사
				유아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산업시스템공학과	공학박사
				법학과	법학박사	신소재공학과	공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도시·교통공학과	공학박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화학공학과	공학박사
				범죄교정학과	교정학박사	* 나노전자융합공학과	공학박사
				청소년학과	청소년학박사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범죄학과	범죄학박사	경호보안학과	경호보안학박사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스포츠학과	체육학박사
				응용정보통계학과	통계학박사	* 범죄심리학과	심리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무역학과	경영학박사	* 상담학과	상담학박사
				회계세무학과	경영학박사	* 의학물리학과	이학박사
				수학과	이학박사	* 도시방재학과	공학박사
				화학과	이학박사	*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박사
				생명과학과	이학박사	* 글로벌파인아트학과	미술학박사
				식품생물공학과	이학박사	* 건설안전학과	공학박사
				컴퓨터과학과	이학박사	*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자산관리학박사
				* 외국인을위한한국어교육학과	문학박사	*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경영학박사
				공공안전빅데이터심리분석학과	공공안전빅데이터심리학 박사	SW안전보안학과	SW안전보안공학박사
합 계		406					

* 표 학과는 학과간 연계과정임.

(별표 2) 전문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개정2008.09.01, 2013.03.01, 2014.10.07., 2017.02.13., 2017.05.02.)

대학원	과 정	캠퍼스 구분	입학정원	학 과	전 공	학위종별
서비스경영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서울	30		서비스경영전공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서비스 컨설팅전공	
	박사학위과정		10		자산관리서비스전공	
					보석마케팅 및 디자인경영전공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						
정치전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서울	17	정치법학과		정치학석사 정치학박사
				북한학과		정치학석사 정치학박사
	박사학위과정		18	외교안보학과		국제정치학석사 국제정치학박사
				공공정책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관광전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서울	47		관광사업경영전공	관광학석사 관광학박사
					여가관광마케팅·리조트개발전공	
	박사학위과정		23		호텔·카지노·컨벤션경영전공	
					식공간연출전공	
	여행·항공·크루즈경영전공					
외식산업경영전공	외식경영학석사 외식경영학박사					

(별표 3) 특수대학원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개정 2009.10.27, 2011.03.01., 2012.03.01., 2013.03.01., 2014.03.01., 2014.06.24., 2014.10.07., 2015.10.15., 2016.09.20., 2017.05.02., 2017.10.04., 2018.01.31., 2018.05.18., 2018.10.01., 2018.11.06., 2019.04.10., 2019.05.07., 2019.11.13., 2020.06.29., 2021.01.14., 2021.03.22., 2021.07.15., 2021.11.26.)

대학원	캠퍼스 구분	입학 정원	학 과	전 공	학위종별
행정·복지 상담대학원	수원	79	행정학과	일반행정전공	행정학석사
				소방재난안전교육·행정전공	
			사법공안학과	범죄수사·범죄심리전공	범죄수사·심리학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전공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실천전공	
				노인복지전공	
			직업학과	직업상담전공	직업학석사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금융·부동산자산관리전공	자산관리학석사
			동양문화학과	동양문화전공	동양철학석사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상담심리학석사			
교 육 대학원	수원	250		유아교육전공	교육학석사
				영어교육전공	
				사서교육전공	
				교정상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상업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다문화교육전공	
				상담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	
				보건교육전공	

대학원	캠퍼스 구분	입학 정원	학 과	전 공	학위종별
공학대학원	수원	56		토목공학전공	공학석사
				건축·안전공학전공	
				서비스융합디자인공학전공	
				소방·방재전공	
				도시재생전공	
				건축공학전공	
				첨단기계·자동차공학전공	
				프롭테크전공	
한류문화 대학원	서울	50	K-culture 융합학과	K-pop 전공	공연예술학석사
				K-culture management 전공	문화예술학석사
				공연음악전공	예술학석사
			K-뷰티학과	뷰티향장학석사	
				공연예술학과	공연예술학석사
			문화콘텐츠학과	시조창작전공	시조창작학석사
				독서지도전공	독서지도학석사
				한국어·문화전공	한국어·문화학석사
예술 대학원	수원	30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미술학석사
				서예학전공	미술학석사
				아동·실버미술지도전공	미술학석사
			디자인·공예학과	공공예술디자인전공	디자인·공예학석사
				시각·금속디자인전공	디자인·공예학석사
대체의학 대학원	서울	61	대체의학과	수기·동작통합치료전공	대체의학석사
				식품치료전공	
				뷰티웰니스전공	
				동물매개자연치유전공	
				미술치료전공	
				음악치료전공	
				스포츠재활치료전공	
				문학치료전공	
				마인드풀코칭전공	
				매체테라피전공	

(별표 4) 등록금의 반환기준(개정 2008.03.01., 2011.07.01., 2017.05.02.)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학기개시일(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별표 5) 대학원생 권리장전(제정 2016.09.2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3조 (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제4조 (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제5조 (저작권)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제6조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제7조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제8조 (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대학원생이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 ② 대학원생은 학과·전공·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 ③ 모든 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 3 장 대학원생의 보호

제10조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 ② 지도교수의 휴직·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대학원장(학과장 등)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학생본인이 지도교수 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제13조 (대학 구성원의 책무)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 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8.12.01)

석 제 호

학 위 기

학과(전공)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므로 ○ ○학 석사의 자격을 인증함.

년 월 일

경기대학교 ○ ○대학원장 ○ ○ ○ 박사 ○ ○ ○ (인)

위 인증에 의하여 ○ ○ 학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경기대학교 총장 ○ ○ ○ 박사 ○ ○ ○ (인)

학위번호 : _____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12.01)

박 제 호

학 위 기

학과(전공)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므로 ○ ○학 박사의 자격을 인증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경기대학교 ○ ○대학원장 ○ ○ ○ 박사 ○ ○ ○ (인)

위의 인증에 의하여 ○ ○ 학 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경기대학교 총 장 ○ ○ ○ 박사 ○ ○ ○ (인)

학위번호 : _____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8.12.01)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이 분은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인류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나타냈으므로) 본 대학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 ○ 학 박사학위 수여를 추천함.

년 월 일

경기대학교 대학원장 ○ ○ ○ 박사 ○ ○ ○ (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 ○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경기대학교 총 장 ○ ○ ○ 박사 ○ ○ ○ (인)

학위번호 : _____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실적증명서

학과(전공) :

성명 :

생년 월일 :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의 ○ ○ 학위 과정에서 년 월간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였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경기대학교 ○ ○대학원장 ○ ○ 박사 ○ ○ ○ (인)

V.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1. 총칙
2. 입학, 전과 및 전공변경
3. 휴학, 복학
4. 교육과정, 수강 및 수업
5.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6. 학위논문

- ※ 학칙 시행세칙 세부규정
 - 계약에 의한 학과 운영 규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경기대학교 대학원 학칙("학칙"이라 칭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각 대학원의 학사업무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 2 장 입학, 전과 및 전공변경

제3조 (지원자격) 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③ 전 항 이외에 각 대학원별 특별한 지원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4조 (구비서류) 각 대학원의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석사과정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
 3. 대학성적증명서 2통
 4. 재직증명서(해당자) 1통
 5. 경력증명서(해당자) 1통
 6. 기타 필요한 서류
- ② 박사과정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대학원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통
 3. 대학원 성적증명서 2통
 4. 연구실적목록 1부
 5. 재직증명서(해당자) 1통
 6. 경력증명서(해당자) 1통
 7. 기타 필요한 서류

제5조 (입학 전형방법) ① 각 대학원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부과 할 수 있다.
- ③ 서류심사는 대학성적 및 대학원성적 그 밖의 각 대학원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
- ④ 면접시험은 전공에 대한 지식, 연구실적, 적성 및 학문에 대한 열정, 외국어 능력 등을 기본 항목으

로 평가한다.

제6조 (배점 및 합격기준) ① 석·박사학위과정의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의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심사 50점
 2. 면접시험 50점
- ② 합격기준은 학과별로 배정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합한 점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한다. 석·박사 학위과정의 면접시험 합격에 필요한 최저점수는 면접위원별 부여 점수 평균이 30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③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하는 경우 배점기준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7조 (합격결정)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신입생등록) 합격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

제9조 (편입학 지원자격) ①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 유사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 ②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 (편입학 전형방법) 편입학 전형방법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재입학) 재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제적된 학과의 동일학기 이하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편입학·재입학 학점인정) 편입학자는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에서 각 학위과정별로 18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재입학자는 재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8.03.01)

제12조의 2(전과 및 전공변경) 전과 및 전공변경은 1학기 이상 재학한 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7.01.16.]

제 3 장 휴학, 복학

제13조 (일반휴학) ① 일반휴학기간은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허가한다.

- ② 신입생(편입생 및 재입학생 포함)은 입영휴학 및 임신, 출산, 육아, 질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학기 중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개정 2007.10.16.)(개정 2015.10.15.)
- ③ 일반휴학자가 휴학기간 만료 이전에 군에 입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군입영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6.)
- ④ 학기중 임신, 출산, 육아휴학을 원하는 자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둔

학생이 육아를 목적으로 요청한 때에 한한다.(신설 2015.10.15.)(개정 2016. 8. 30)

⑤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질병에 의한 휴학자는 병원장이 발급한 4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6.)

⑥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휴학하는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무효로 한다.(개정 2007.10.16)

제14조 (군입영휴학) 군입영명령에 의해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입영 전 10일 이내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군입영휴학자의 성적 평가) ① 군입영휴학자 중 중간고사를 필하고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수강한 학생이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하고자 하는 경우 성적인정원을 작성하여 수강하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교수는 제1항의 군입영휴학자의 성적을 성적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군입영휴학자에게는 중간시험의 성적과 평소의 출석,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기말고사기간 종료 후 군입영휴학자의 성적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개강전 소정기간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군제대하는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학기에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신청자는 복학허가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당해 학기 제반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입영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 및 복학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납부를 면제한다.(개정 2009.10.27., 2017.01.16.)

제 4 장 교육과정, 수강 및 수업

제16조 (교육과정 편성) 각 대학원별 교육과정은 전공과목, 공통과목, 선수과목, 자유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0.03.01)

제17조 (교육과정의 개편) ① 교육과정은 매 2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부분 개편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할 때는 학과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주임교수가 개편사유와 개편안을 작성하여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8조 (교육과정의 개설) 주임교수는 교육과정에 의한 다음 학기의 개설교과목 및 담당교수 시간표를 매학기 수업 종료 1개월 전까지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6)

제19조 (교과목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내·외의 전임교원 또는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로 한다.

제20조 (강의담당 과목수)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을 제외한 교원의 대학원 강의는 한 학기 한 과목만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두 과목을 강의할 수 있다.(개정 2007.10.16)

제21조 (학점수) 교과목 당 학점은 3학점(특수대학원은 2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대학원장

의 허가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공통과목의 설정) 각 학과의 공통과목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23조 (선수과목) ① 일반대학원의 경우 동일학과가 아닌 타 학과 졸업생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상, 박사 학위과정은 12학점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선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24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교내 전산망(종합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수강신청 변경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교내전산망(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학기 교과목의 수강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으며, 임의로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이 제출되어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대학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05.02.)

④ 동일한 교과목을 재수강한 경우에는 선취득 한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한다.

제24조의 2 (수업) ① 일반대학원은 주간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업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7.01.16.]

제 5 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 1 절 외국어시험

제25조 (응시자격)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각 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에 한한다.

제26조 (응시절차)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은 기일 내에 전형료와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시험시기) 외국어 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자국어가 영어인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다.

제29조 (합격인정) 외국어 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0조 (외국어 시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2. TOEFL 530점(PBT), 197점(CBT) 또는 71점(IBT)이상, TOEIC 700점 이상, OPIc IL 이상, TEPS 327점

이상, IELTS 5.5이상, CEFR(영어) B2 이상 취득자 및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타 외국어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11.03.01., 2017.10.04., 2019.05.28., 2022.02.11.)

3. 기타 각 대학원 내규에서 인정한 자

제31조 (재시험)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재응시 할 수 있다.

제 2 절 종합시험

제32조 (응시자격) ① 석사과정 :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② 박사과정 :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학기단축자는 각 대학원별로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09. 10. 27)

제33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기일 내에 전형료와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시험과목) 종합시험과목은 석사과정은 2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36조 (출제위원) 출제위원은 강의 담당교수 또는 전공분야 교수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한다.

제37조 (합격인정)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8조 (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과목이 있을 때에는 재응시할 수 있다.

제 6 장 학위논문

제39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 2014..3. 1)

① 석사과정

1.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수료연한 이상 등록 한 자
5.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학위논문 본 심사 완료예정자
6.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② 박사과정

1.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3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수료연한 이상 등록 한 자
5. 수료일로부터 8년 이내에 학위논문 본 심사 완료예정자.

6.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제40조 (학위논문 작성언어)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제41조 (논문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의 대학 전임교원 또는 기타 각 대학원장이 특히 인정한 자로 하되, 일반대학원의 경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반대학원 내규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 (논문지도교수 변경) ① 1년 이상의 해외여행, 1년 이상의 휴직,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 지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은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6. 8. 30)

제43조 (논문지도비의 납부) ① 논문지도를 받는 학생은 논문 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비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 내에 납부한다.(개정 2009.10.27., 2017.01.16.)

③ 논문지도비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01.16.)

제44조 (공개발표) ①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제출전에 학과별로 공개발표를 하여야 하며, 학과주임교수는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한 공개발표결과 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 필요에 따라 공개발표를 할 수 있다.

③ 공개발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45조 (심사용 논문제출) 학위논문제출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심사용 논문을 제본하여 심사일 1주일 전까지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및 추천서 1통

2. 심사용 가제본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개정 2008.12.01.)

3. 경력 및 연구실적 조서 1부(석.박사 공통)

4. 박사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과정 중에 공인학술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시행 기준은 각 대학원별로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09.10.27.)

5. <삭제 2006.09.27.>

6. 실증분석연구인 경우 논문에 사용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에서 산출된 통계분석 결과 출력 원본

7.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연구윤리 수료증 각 1부(신설 2015.10.15.)(개정 2016. 6. 28)

제47조 (심사위원 위촉) ① 각 학과 또는 전공주임교수는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에는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 후보 중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을 심사하도록 한다.

③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자동

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박사학위 심사위원은 교외인사 2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3인까지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의 대학 전임교원 또는 기타 각 대학원장이 특히 인정한 자로 한다.

제48조 (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49조 (심사위원의 교체금지) 논문심사를 시작한 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해외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과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제50조 (심사위원의 정족수)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위원 전원, 박사학위청구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제51조 (심사의 방법)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논문평가 및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1. 심사는 1회 이상 실시한다.

2. 심사에서는 논문제출자가 참석하여 연구의 목적, 방법, 논문의 내용, 결과 등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3.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심사에서 「부」의 판정을 받은 자는 해당학기에 한해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상실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개정 2006.09.27)

1. 본 심사는 최소한 3회 실시한다.

2. 본 심사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논문제출자가 참석하여 연구의 목적, 방법, 논문의 내용, 결과 등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3. 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절히 보완, 수정하였는가를 심사한다.(개정 2008.12.01)

4. 본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본 심사에서 「부」의 판정을 받은 자는 해당학기에 한해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상실한다.

제52조 (심사기간) 석사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기간은 대학원장이 정하고, 심사 중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의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53조 (심사기간의 연기) 논문심사의 결과가 학위논문으로서 불충분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사위원은 추가 연구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위원장은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 (판정)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평가를 가·부로 하여 석사학위 청구논문인 경우 2인 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인 경우 4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가」로 평가할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55조 (학위논문의 합격과 발표) 합격된 박사학위 논문은 합격일로 부터 1년 안에 그 논문을 인쇄하여 공표

하여야 한다.

제56조 (합격된 논문제출) 합격된 논문 제출은 규정된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학위논문의 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학위논문 규격 및 인쇄 방식

1. 판 종 : 4.6배판(19.0cm×25.6cm), 건축전문대학원 A4(21.0cm×29.7cm)
2. 지 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3. 인쇄방식 : 횡서로 인쇄한다.
4. 표지색깔 : 석사학위논문은 검정감색, 박사학위논문은 흑색으로 한다.
5. 제 본 식 : 클로스 양장으로 한다.
6. 표지인쇄방식 : 별지도해에 따르되, 명조체 2호 활자로 하고, 금색으로 인쇄한다.
7. 속표지 양식과 인증양식 : 별지도해를 따른다.
8. 학년도표시 : 학년도는 졸업년월 보다 1년 늦게 표시한다.
예) 2004년 2월 졸업인 경우에는 2003으로 그리고 2004년 8월 졸업인 경우에도 2003으로 표시한다.

② 학위논문이 반드시 갖출 사항과 순서

1. 겉표지(규격 제1호)
2. 내표지(규격 제1호) 백색간지를 한장 삽입하고 그 다음장에 내표지가 나온다.
3. 제출문(규격 제2호)
4. 인준서(규격 제3호)
5. 목차
가. 목차의 세분은 장, 절, 항, 또는 I, 1, (1), 1), ①, ... 등으로 분류하며 규격 제4호에 따른다.
나. 표 및 도목차 표기 순서는 수표, 도표의 순서로 하고 표1, 표2, 표3, ... 그림1, 그림2, ...와 같이 표시한다.
6. 논문개요 : 3페이지 이내로 간명하게 기술한다.
7. 본문
가. 백색 별지를 한 장 삽입하고 본문 차례가 시작된다.
나.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이어야 한다.
다. 각주는 일련번호를 붙이고 해당 면 밑, 장 후면 또는 논문 말미에 기재한다.
8. 참고문헌 : 계열별 특성을 인정하나, 국내문헌, 외국문헌을 모두 저자별 가, 나, 다 순으로 저자별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되 일련번호를 기입할 수도 있다
9.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10. 본문이 국문이면(외국어초록), 외국어이면(국문초록)

제58조 (학위논문 제출 부수) 학위논문이 완성되면 소정기일 내에 학위논문 5부를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도서관 제출 확인서 1매, 저작권 위임서 1매, 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1매 포함)
(개정 2009.10.27, 2014. 3. 1., 2015.10.15., 2017.12.22., 2019.05.2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학칙 시행세칙의 폐지) 본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일반대학원, 건축전문대학원, 정치전문대학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관광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학칙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본 학칙 시행세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각 대학원별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이 개정 시행세칙 제14조의2 및 제41조는 이 시행세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시행세칙 제46조제6호는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 제39조의 ①항 4호와 ②항 3, 4호는 개정학칙 제17조의 수업연한 단축의 시행과 관련되어 2007학년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의 시행세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종전의 학칙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0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5. 10. 1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06. 2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이 시행세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6. 08. 30)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01. 16)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05. 02)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10. 04)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12. 22)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 05.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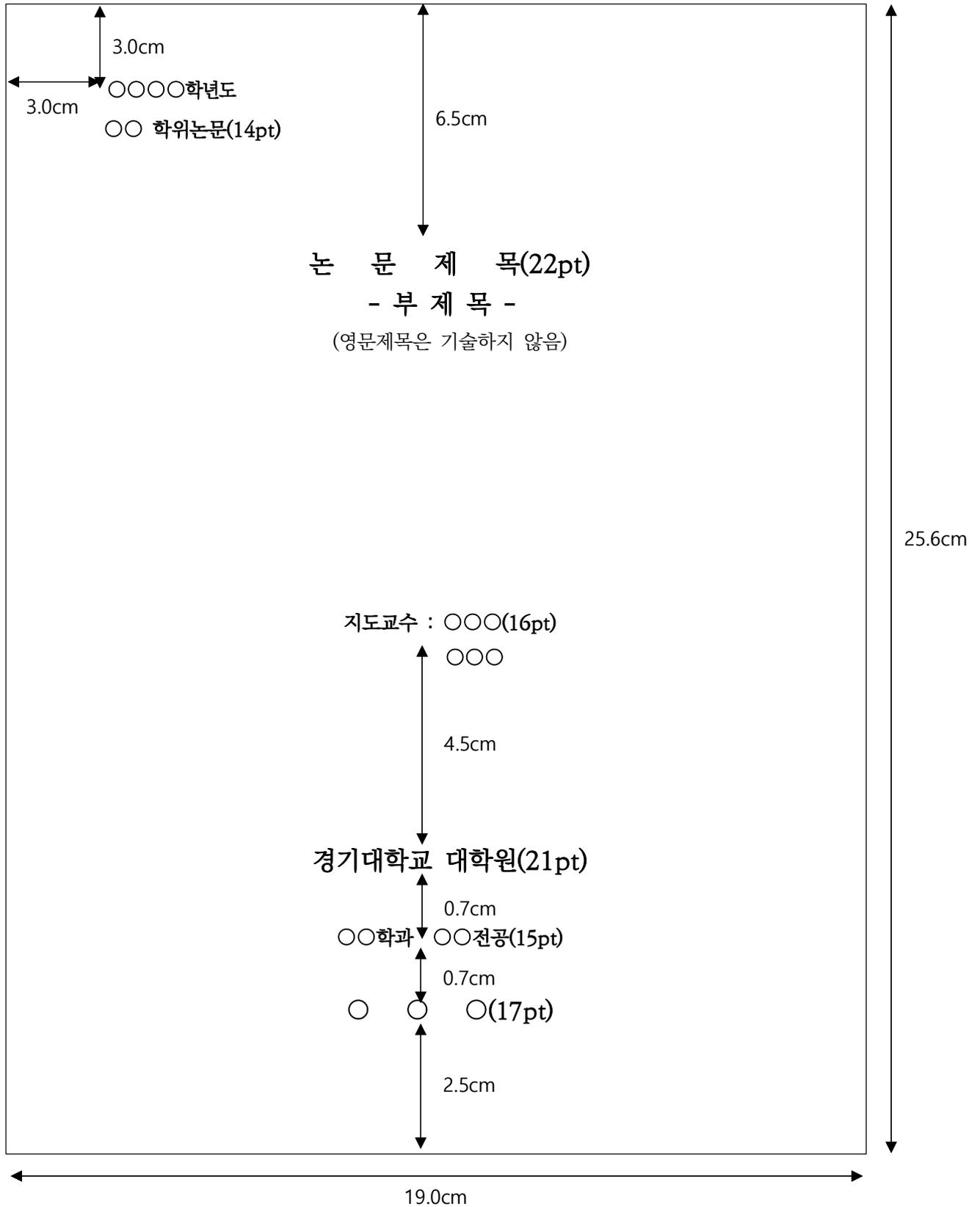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 0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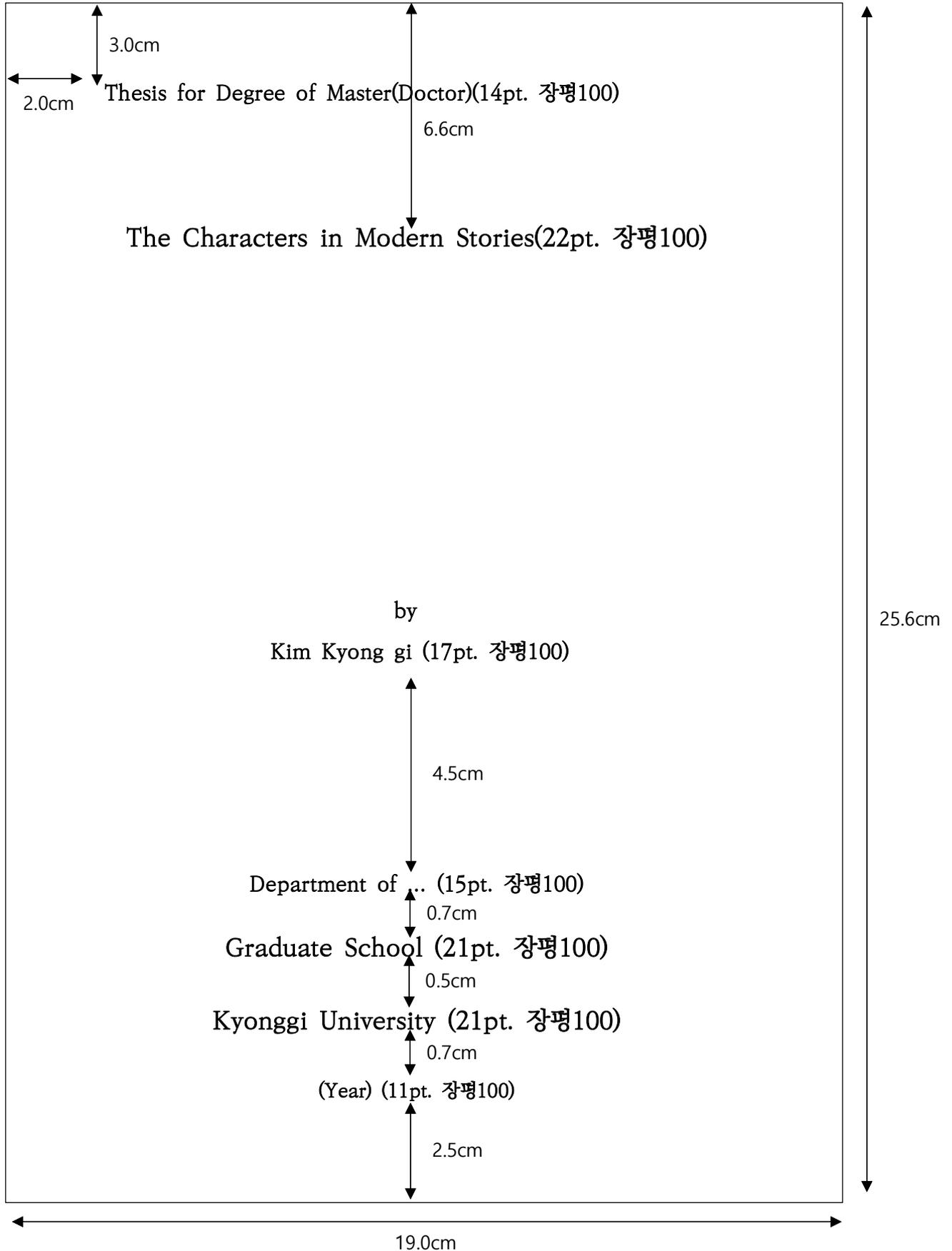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석·박사학위논문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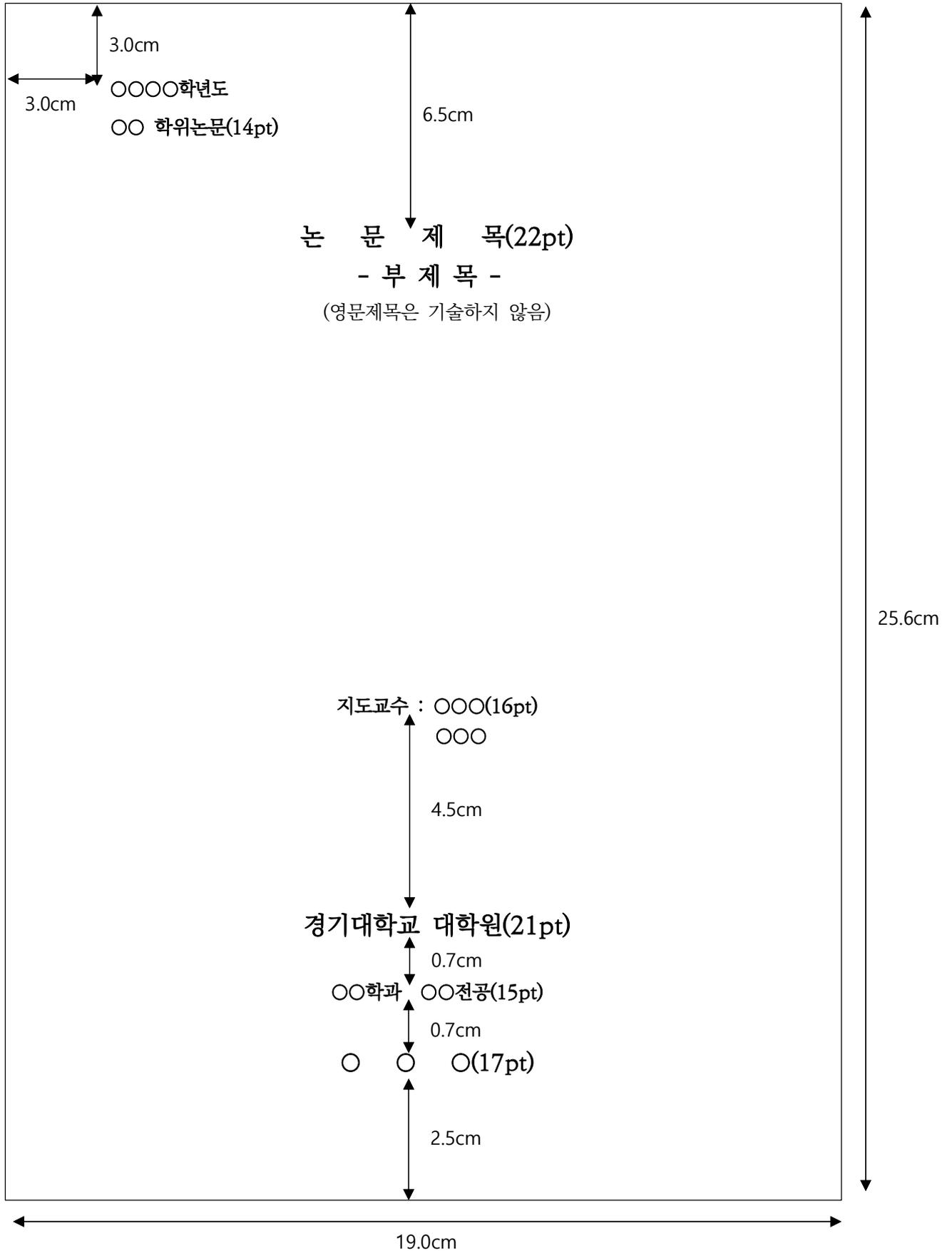
규격 제 1 호(겉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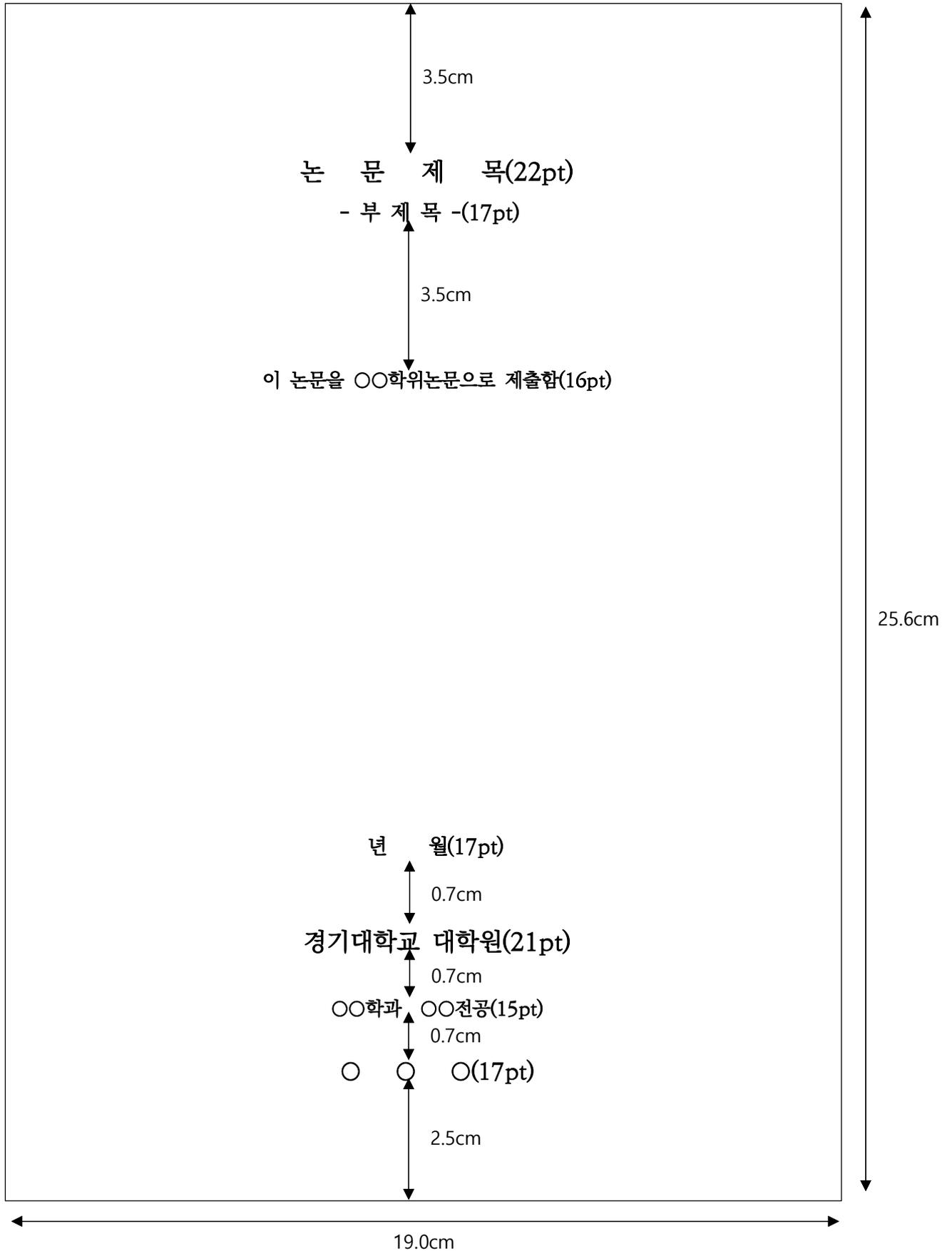
규격 제 1 호(영문 겉표지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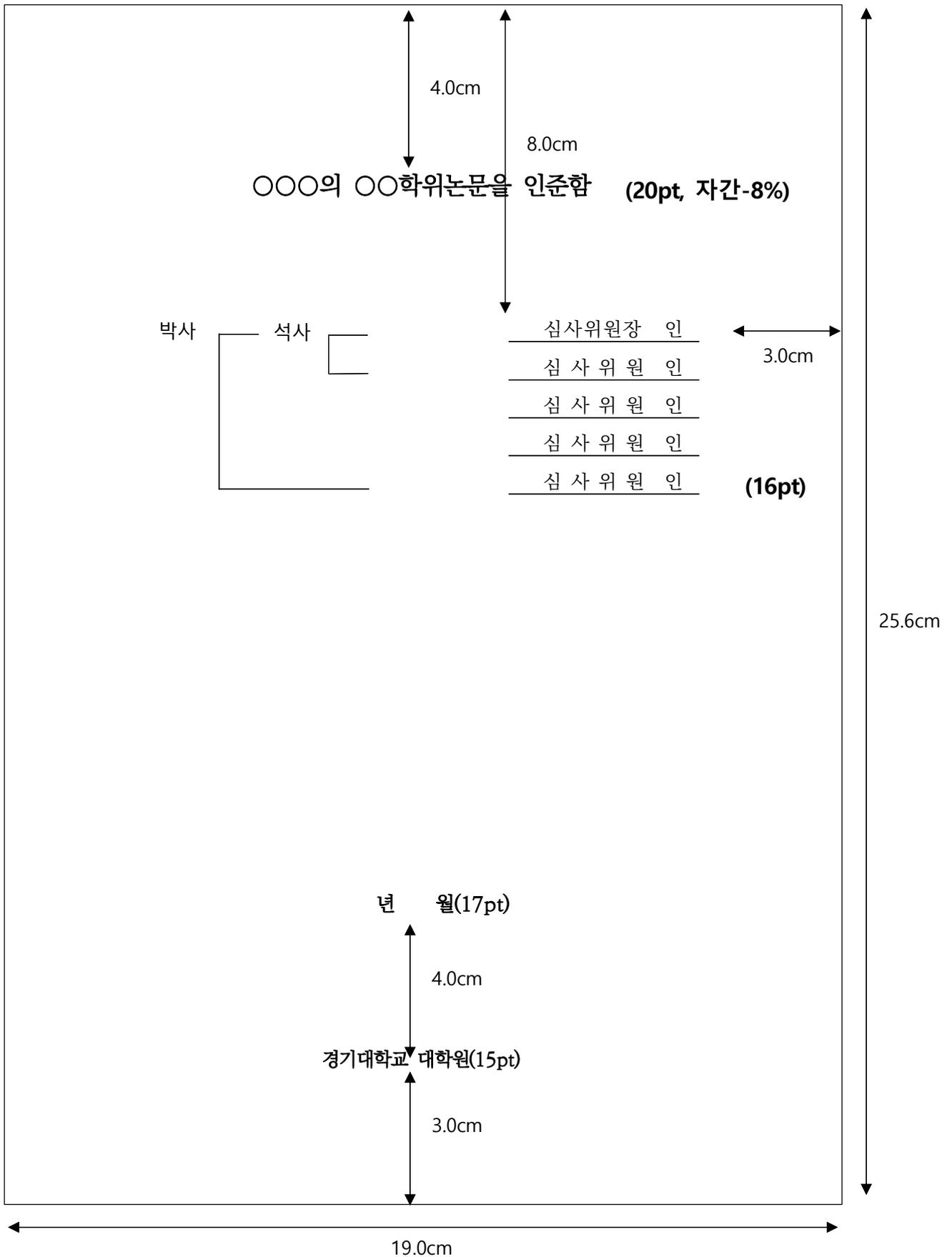
규격 제 1 호(내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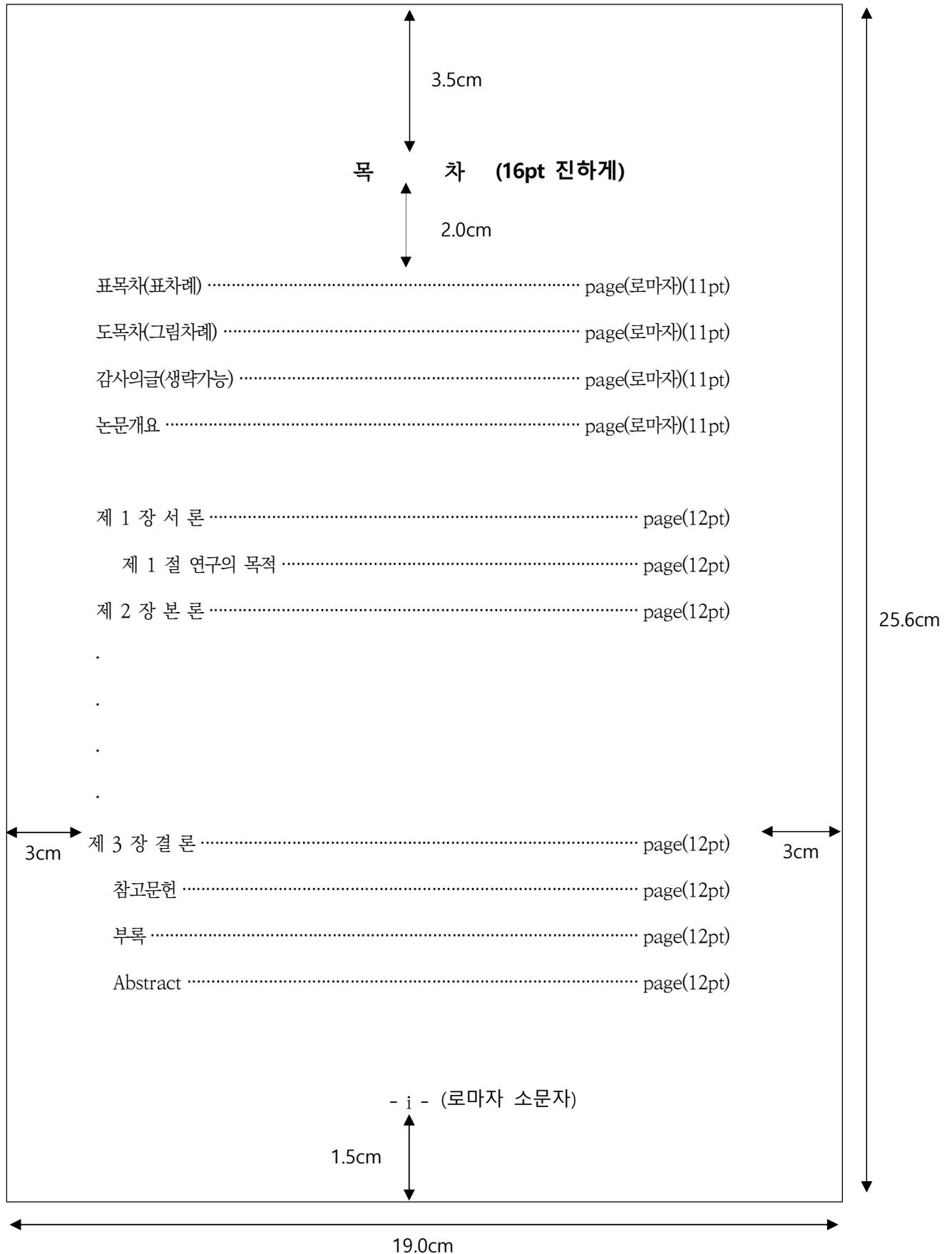
규격 제 2 호(제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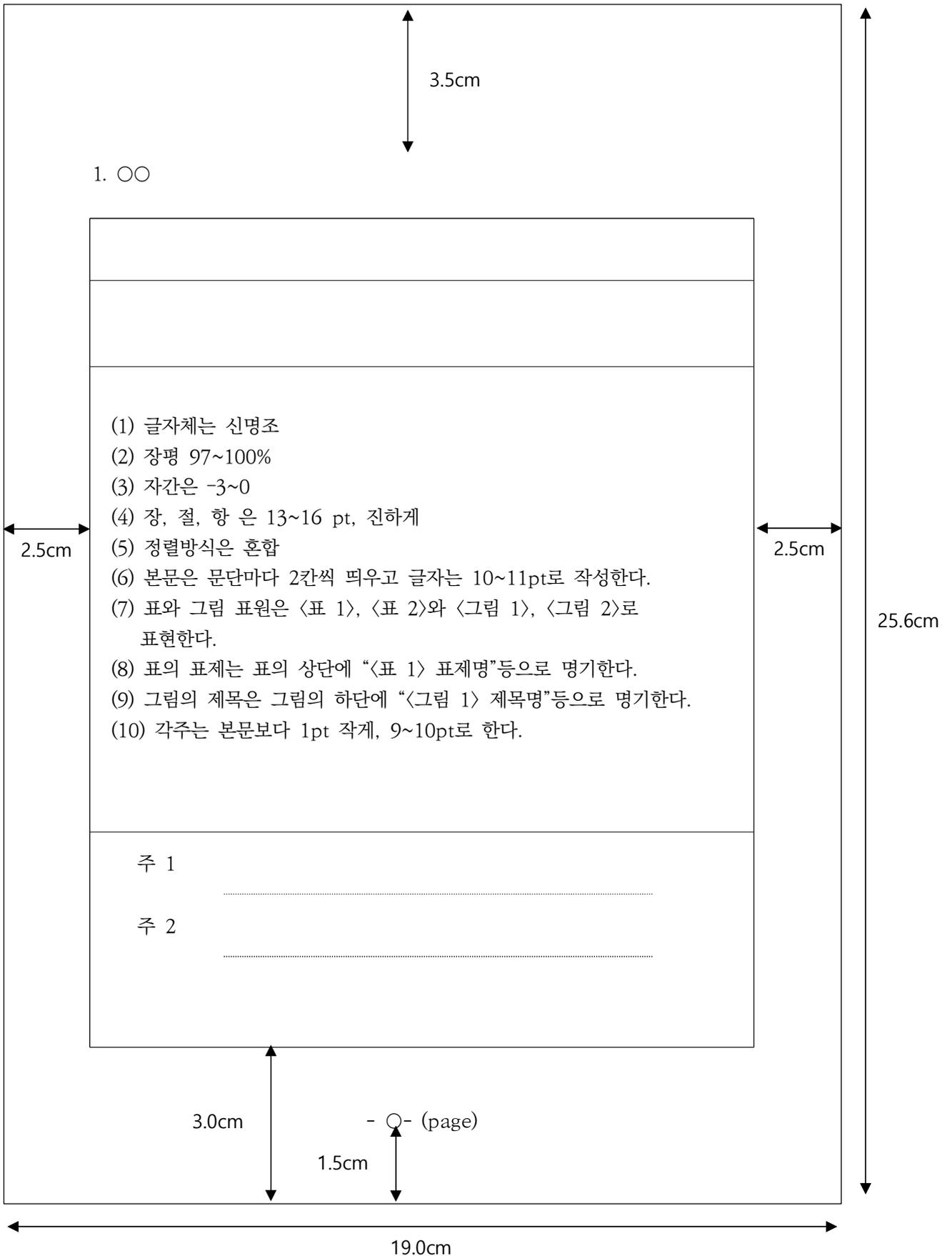
규격 제 3 호(인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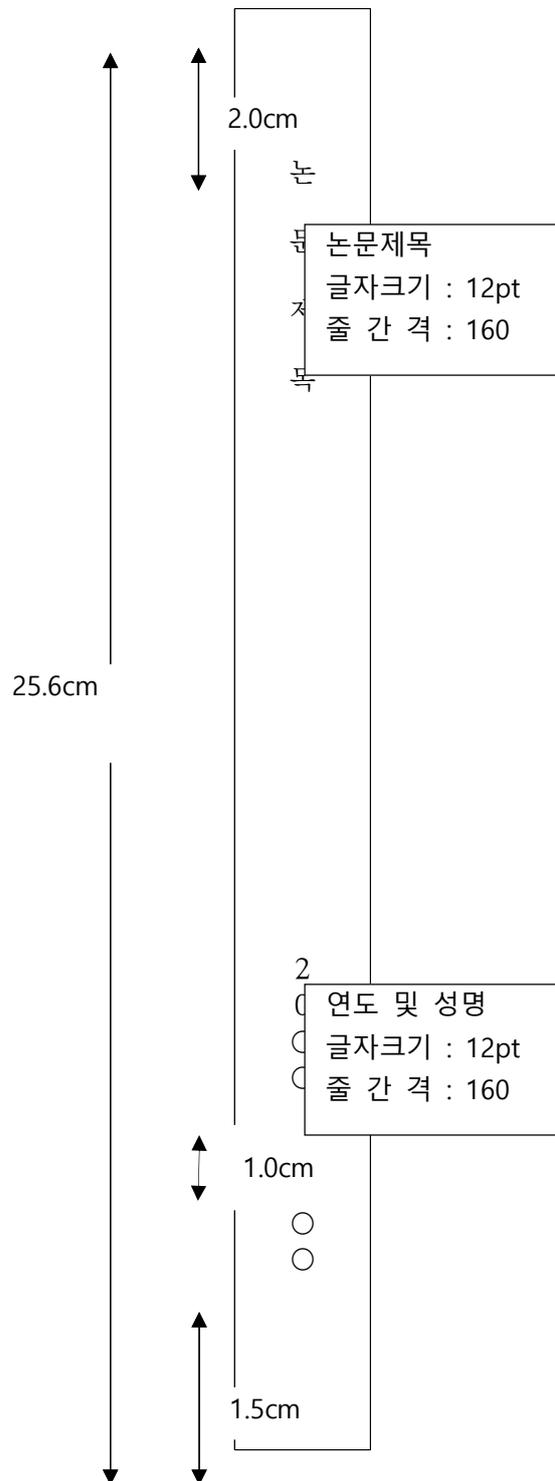
규격 제 4 호(목 차)



규격 제 5 호(본 문)



규격 제 6호(책 등)



계약에 의한 학과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경기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32조, 「경기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대학원 학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에 의한 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학과"라 함은 본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2.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신설 2019.04.10.)
3. "채용조건형"이라 함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교육형"이라 함은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협약 대상) ① 계약학과의 설치에 있어 협약대상 기관은 공공성 및 개방성을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관련 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협약 대상이 될 수 없다.(신설 2019.04.10.)

제4조(계약학과의 명칭·학생 정원 등) ① 본교에 설치한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학위명 등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9.04.10.)

②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학생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학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04.10.)

제5조(계약학과 심의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설치와 폐지, 평가, 정원 조정 및 예·결산 관리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9.04.10.)

② 이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입학 및 학사관리

제6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은 「학칙」 및 「대학원 학칙」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일 기준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인 사람이어야 하며, 학생 신분인 경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제외) 졸업한 이후부터 입학일 기준 재직기간 10개월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9.04.10.)

③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을 초과하는 자에 한한다.(신설 2019.04.10.)

제7조(입학 전형) 계약학과의 입학생 선발은 경기대학교 입학 모집요강에 따른다.

제8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계약학과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에 의하여 방학 등을 이용한 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수업) ① 수업은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되, 계약에 의하여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계약학과 졸업학점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19.04.10.)

제10조(학사제도 적용 예외)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 및 「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이중전공, 연계전공, 학점교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3장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제11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학칙」 및 「대학원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연1회 이상 협의한다.

② 학생은 위 교육과정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 및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①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 절차는 당해 대학(원)의 기준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하고, 교육과정 인정기준과 학적부 표시방법 등은 세부지침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9.04.10.)

제4장 졸업 및 학위수여

제13조(학위수여) 계약학과의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서 「학칙」 제56조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대학원 학칙」 제32조의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각각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5장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제14조(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 ①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각 대학(원)의 장은 모체학과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계약학과 신설요구서 및 정규과정의 학과 신설과 동일한 구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4.10.)

② 계약학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 설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를 동일 명칭의 학과(전공)를 중복 설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관련 협의체 등과 상호 협의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하되, 당해과정의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학과의 운영) ① 계약학과는 모체학과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학사관리는 관련 대학(원)장이 관장한다.(개정 2019.04.10.)

②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주관 대학(원)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04.10.)

③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본교와 협약기관이 각각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약기관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9.04.10.)

④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재협약하고자 할 경우 본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동 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거쳐 계약학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9.04.10.)

⑤ 계약학도가 그 설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재학생 보호 방안은 협약서에 의하되, 당해 계약학과 재학생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는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학과 폐지 등에 따른 학생보호) ① 계약학과의 운영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학도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도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개정 2019.04.10.)

②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개정 2019.04.10.)

③ 상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50% 이상을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 1인의 교육에 필요한 필요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04.10.)

④ (삭제 2019.04.10.)

제17조(퇴직에 따른 학생보호) ①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②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③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 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9.04.10.)

제17조의 2(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협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채용조건형인 경우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③ 재교육형인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조 변경 2019.04.10.)

제18조(회계관리) 계약학과의 회계 관리는 교비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6장 보 칙

제19조(준용규정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학칙」 및 「대학원 학칙」,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04.10.)

② (삭제 2019.04.10.)

부 칙(제정 2017. 1. 16)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 4. 10)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계약에 의한 학위과정 명칭, 정원 및 수여 학위 등

입학년도	학과(전공)명	학위과정	정원	학위명	주관 대학(원)	운영학과	유 형	비 고
2013학년도 2학기	전자출판 콘텐츠학과	석사과정	20	언론학석사	일반대학원	언론미디어학과	채용조건형	운영종료
2014학년도 2학기	전자출판 콘텐츠학과	석사과정	10	언론학석사	일반대학원	언론미디어학과	채용조건형	운영종료
2014학년도 2학기	산업안전 보건학과	석사과정	12	공학석사	건설·산업 대학원	건축공학전공	재교육형	운영종료
2016학년도 1학기	양조경영학과	석사과정	15	경영학석사	서비스경영 전문대학원	서비스경영전공	재교육형	

[별지 제1호 서식]

계약학과 신설 요구서

작성: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인)

학과명칭		학 위	학사 석사 박사
설치유형	채용조건형 재교육형	학 위 명	
입학정원		설치운영 기 간	
산업체명			
주 소			
설치장소			
학생선발 방 법	※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간략히 작성하고, 별지 첨부)		
운영경비 및 등 록 금	※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산업체 지원 비율 및 학생 본인 부담금 등) ※ 간략히 작성하고, 별지 첨부		
학 기 및 수업일수	※ 간략히 작성하고, 별지 첨부		
기타사항	※ 계약학과 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기재 ※ 간략히 작성하고, 별지 첨부		

※ 세부사항은 별지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계획 1부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별지 제2호 서식]

경기대학교와 ()의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협약서(개정 2019.04.10.)

경기대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_____(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경기대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산업체"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협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와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제3조(학생 선발·입학) 입학대상은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4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

제5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경기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6조(학사관리 및 운영위원회) ①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② 계약학과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교"와 "산업체"가 각각 위촉한 총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산업체" 관계자 및 계약학과 학생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7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계약학과와 교육과정은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별지]와 같다.

② 계약학과와 교육과정은 계약학과 설치 이후 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제8조(학위수여) ① 학위수여는 「경기대학교 학칙」 및 「계약에 의한 학과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기타 학위수여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경비 부담) ①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산업체” 소속직원이 각각 납부한다.

② “산업체”와 “계약학과 학생”의 경비(입학금 포함)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분담비율 : 50% 이상
2. 학생 분담비율 : 50% 이하

③ 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④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하며, 이에 따라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경기대학교 학칙」 및 「경기대학교 대학원 학칙」의 ‘등록금 반환 기준’을 따른다.

⑤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인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을 통상적으로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자기개발비용, 복지비용 등으로 납부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약’에 따라 학생이 제8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협약은 해지된다.

② “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체 시설사용) ①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3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경기대학교 학칙 및 계약에 의한 학과 운영 규정 등을 적용한다.

제14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제15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대학교 학칙, 계약에 의한 학과 운영 규정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가 인가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학교”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경기대학교

업체명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이의동)

주소 :

총 장 _____ (직인)

대표자 _____ (직인)

Ⅵ. 대학원 학칙시행내규

1. 입학에 관한 시행내규
2. 등록 및 학적에 관한 시행내규
3. 교육과정·수강신청·성적평가에 관한 시행내규
4. 외국어시험 및 전공종합시험에 관한 시행내규
5. 학위논문 및 지도교수위촉에 관한 시행내규
6.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내규
7. 주임교수 위촉 및 학과운영위원회에 관한 시행내규
8. 장학금 지급 시행내규
9. 학점교류 수강 시행내규
10. 외국인의 입학 및 장학금 지급 시행내규
11.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내규
12.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시행내규
13.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시행내규

1. 입학에 관한 시행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제2장의 입학에 관한 세부 시행사항 및 그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제한) ① 본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조교제외)은 재학기간을 휴직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본교 대학원 재학 중 전임교원으로 초빙된 자는 학위취득 시까지 대학원 강의 및 논문지도를 하지 못한다.

제3조(입학전공분야) ①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의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②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각 학과의 내규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계통의 학과 또는 전공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입학정원 배정) 대학원의 각 학과별 입학정원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하며, 교육부 고등인력양성사업 등 정부나 대학의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 학과나 교수에게는 별도의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3.03.23)

제5조(입학인원제한) ① 대학원 학과별 입학지원 인원이 석박사 각각 2인 이하인 경우에는 학생을 선발하지 아니한다. 단 대학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2.03.01., 2013.10.01., 2014.03.01., 2017.08.04)

② <삭제 2017.08.04.>

제6조(편입학) ① 국내·외 대학원에 재적 또는 수료한 자가 편입학을 지원할 경우 동일 또는 유사계열의 전공에 한하여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전공주임교수(이하 "주임교수"라 한다)가 지원전공의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18학점까지 인정하되, 통합과정은 3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인정된 전적 대학원의 학점에 따라 대학원장은 편입학 학기를 결정하여 허가한다.

제7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의 동일 학기 이하에 한하여 2회까지 허용한다.

② 재입학은 제적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후 허가한다. 다만, 학칙 제15조, 제16조의 1호, 2호, 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2.01.)

③ 미등록 제적자, 미복학 제적자, 자퇴자 중에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개시 30일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고 주임교수의 동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학기에 재입학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자의 학점은 재입학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퇴학 또는 제적된 기간은 제외한다.

제8조(신입생등록) 모든 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시행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①항 및 제②항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8.0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2.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등록 및 학적에 관한 시행내규

제1조(목적) 이 시행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 3장에서 정한 등록 및 학적 사항에 관한 세부시행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의 종류) 대학원 등록의 종류와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등록 : 수업연한 내의 수료학점을 위한 등록
2. 입학등록·편입학등록·재입학등록 :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위한 등록
3. 학점등록 : 정규등록 학기 이후 수료학점 취득을 위한 등록
4. 연구등록 : 수료 후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논문연구 등록

제3조(수업연한 단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17조 및 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학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본교 대학원에 진학한 자가 수업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 3학기 이내에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 이상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2. 박사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은 5학기까지 수료에 필요한 모든 이수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나머지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연구등록) ①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후 논문제출 기한 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경우 해당학기에 연구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1., 2014.03.01, 2016.06.17)

② <삭 제> (개정 2012.03.01)

③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1, 2014.03.01)

④ 수료재학기간 중의 박사과정생은 1회에 한하여 당해학기 등록금의 20%에 해당하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연구등록생의 신분을 취득한다.(개정 2014.03.31)

⑤ 연구등록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연구지도를 받아야 하며, 학생이 희망할 경우 전공교과목을 3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4.03.01)

⑥ 학칙시행세칙 제39조에서 규정한 각 과정별 학위청구논문제출 기한이 경과된 자의 학위논문제출자격 부여 여부는 해당 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등록을 하고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03.01)

⑦ <삭 제> 본조 4항에 통합 명기(개정 2017.03.31.)

⑧ 연구등록제의 시행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학칙시행세칙 제39조에서 규정한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이미 경과한 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⑨ <삭 제> 부칙 제2조(경과조치)로 개정.(개정 2012.03.01)

⑩ 석사 및 박사과정 영구수료자의 연구등록을 위해서는 연구논문 시작학기에 해당학기 등록금의 20%를 연구등록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2개 학기(1년)까지 연구등록자 신분이 유지된다.(신설 2014.12.05., 개정 2017.03.31)

제5조 <삭 제> (개정 2012.03.01)

제6조(휴학자 등록처리) ① 정규등록을 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원하는 자는 휴학원을 작성하여 주임교수의 승인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 입영, 임신, 출산, 육아 질병으로 인한 휴학, 또는 해외파견이나 전근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8.10)

②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고 휴학을 원하는 자는 학기 개시 전에 휴학원을 제출해야 한다.

- ③ 수업일수 4분의1 이전에 휴학하였을 때의 등록금은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
- ④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휴학할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이 경과하여도 휴학이 가능하며 다음 복학시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한다.
- ⑤ 임신, 출산, 육아 및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질병 또는 해외파견 이나 연수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칙 제13조의 휴학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여 허락할 수 있다.(개정 2015.08.10, 2016.11.03.)

제7조(복학) 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의 재학생 등록기간 중에 소속 대학원 소정양식의 복학 원서에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소속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 휴학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퇴학원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주임교수의 동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제적)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자
2. 미등록자
3. 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 자
4.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계속하여 2.0 미만인 자

제10조(전과) ① 전과는 캠퍼스 구분 없이 가능하며,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또는 복학 예정자로서 동일 계열 또는 유사계열에 한하여 허가하되, 변경 전 학과와 변경 예정 학과의 주임교수의 동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3.01., 2016.11.03., 2018.06.25. 2021.10.13.)

②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고 해당 주임교수에게 이수학점인정서를 확인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3., 2021.10.13.)

1. 전공변경원
2. 이수학점 인정서 및 성적증명서

③ 전과 신청서 제출 및 승인은 매 학년도 매 학기 개강 전 소정의 기간에 시행한다. (신설 2021.10.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시행내규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3조의 적용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6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재입학한 경우에도 수업연한 단축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8.05.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개정 전에 연구등록을 필하지 않은 수료자가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미등록한 학기에 대한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내규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시행내규를 적용한다.

② 본 내규 개정 전 2회 이상 연구등록한 자는 연구등록자로 한다.

③ 본 내규 개정 전 1회 연구등록한자는 당해학년도 등록금의 10%를 연구등록금으로 납입하여 연구등록자로 한다.

부 칙(개정 2014.12.0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8.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06.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11.0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3.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06.2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10.1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교육과정·수강신청·성적평가에 관한 시행내규

제 1 장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과목 개설

제1조(목적) 대학원 학칙 제4장의 교육과정 조항과 학칙시행세칙 제4장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등에 관한 세부시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수구분 및 학점) ① 대학원의 교육과정의 이수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공과목

- ㉠ 기초공통과목(석사, 박사학위과정)
- ㉡ 전용과목(석사,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공용과목

2. 선수과목

3. 자유선택과목

- ② 각 학과에서는 이수구분과목별로 구분하여 내규로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9.02.01.)
- ③ 모든 교과목은 한 교과목당 1학기 3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09.01)

제3조(교육과정의 편성) ① 각 학과 교육과정은 주임교수가 학과운영위원회를 거쳐 편성한다.

② 각 학과 교육과정의 최소 과목 수는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10과목 이상.

단, 건축설계학과는 14과목 이상.

2. 박사과정 : 14과목 이상.

③ 각 학과 교육과정의 최대 과목 수는 학과 운영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에서 설정한다. 단, 대학원장은 특정 학과의 교과목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할 경우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축소 조정할 수 있다.

④ 학과 내부에 세부 전공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학과특성상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과 내 전공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제정 2012.09.01)

제4조(교육과정 개편) ① 각 학과 교육과정은 학문적 특성과 변천을 고려하여 매 2년 마다 해당 학과운영위원회를 거쳐 주임교수가 개편하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확정한다.

② 각 학과별로 일부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학과운영위원회의 전원 동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된 교과목을 개설 할 수 있다.

③ 교과목 개편과 관련하여 학과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최종 결정한다.(제정 2012.09.01)

제5조(삭제) 2019.02.01.)

제6조(특강개설) 대학원은 학제간의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강을 개설할 수 있다. 대학원 개설 특강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는 3학점, 박사는 6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교과과목의 개설) ① 주임교수는 다음 학기에 개설해야 할 교과목 및 담당교수 등에 관한 설강계획서를 매 학기말에 확정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각 전공별 주임교수가 제출한 설강계획서를 취합하여 종합시간표를 작성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신청기간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경우 대학원의 학과별 개설 교과목수는 대학원장이 학과 학생 수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2.09.01)

- ④ 수강신청 인원이 2인 이하인 강좌는 개설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인 이하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제정 2012.03.01, 개정 2014.03.01)
- ⑤ 석·박사 공용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교과목도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박사 공용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다.(제정 2012.09.01)

제8조(교과목 담당교수)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실기 및 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교과목 담당교수라 한다)은 다음 각 1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의 부교수 이상인 자
2. 교내·외의 전임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3. 각종 학술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4. 기타 각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제9조(담당교과목수의 제한) 교수 1인당 학기별 담당교과목수는 석·박사 학위과정 구분 없이 1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하여 강의할 수 있다.(개정 2012.09.01., 2019.02.01.)

제10조(교과목 담당교수 및 강사 위촉) ① 주임교수는 개설과목 담당교수를 1학기는 1월말, 2학기는 7월말까지 확정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 ② 주임교수는 신규 강사 제청 시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이 부모의 강의를 사전신고 없이 수강하였거나, 불가피하게 수강하였으나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지 않은 교원은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관련 교과목 담당교수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9.04.29.)

제11조(강의계획서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해당학기 개강 전까지 교내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강의 첫 시간에 수강생 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2조(전공구분) 각 학과는 학과 내규에 따라 세부전공을 둘 수 있으며, 세부전공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03.01)

제13조(최소이수학점) ①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석사 24학점 이상, 박사 36학점 이상으로 하며, 각 학과 내규에 따라 교육과정별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건축설계학과는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을 42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03.01).

- ② (삭제 2019.02.01.)

제14조(전공이수학점) ① 석·박사학위과정의 전공이수학점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단, 건축설계학과는 매학기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1.03.01)

- ② 전공학점 외에 타 학과 또는 학생이 필요한 기타 교과목을 자유선택으로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학기 3학점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단, 자유선택과목의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의 2(수업) ① 수업은 주간, 야간, 주말 등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7.06.09.)

- ② 삭제(개정 2017.06.09.)

제 2 장 수강신청 및 성적

제15조(수강신청) ①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은 대학원이 정하는 수강신청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교내 전산망(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변경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교내 전산망(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지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학기 교과목의 수강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으며, 임의로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이 제출되어도 인정하지 아니 한다. 단, 대

학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02.09.)

④ 학생이 부모의 강의를 수강 신청한 경우 수강을 회피하도록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수강지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강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04.29.)

제16조(시험) ① 각 과목의 성적평가는 필기시험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평상시의 학업태도, 과제물, 수시시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학생이 부모의 강의를 불가피하게 수강한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임교수는 성적 공정 여부를 확인한 후 근거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04.29.)

제17조(교과목성적표 제출)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의 수강생들에 대한 성적을 학교 전산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교과목 시험의 성적표 및 근거 자료를 1학기는 6월말, 2학기는 12월말까지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적표 제출 시, 15주 이상의 수업에 대한 학생 출결 사항 및 성적이 명시된 학생 출석부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3.01., 2021.12.15.)

제18조(교과목성적의 정정 및 학점포기) ①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해당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표에 누락 등 착오가 있을 경우 성적정정 기간 내에 해당교수는 해당시험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점포기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포기신청서 및 성적증명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점포기 신청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하되, 수료생의 경우 취득 성적 등급이 'F'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8.08.09)

③ 기 취득교과목("F"학점도 포함)중 동일과목을 다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포기를 먼저 신청하여야 한다. 단, "F"학점을 재수강할 시는 학기 및 학년도 제한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재수강) ① 성적이 F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은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성적이 불량한 교과목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재수강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당초 학점은 말소된다.

③ 재수강할 교과목의 신청은 동일과목을 원칙으로 하나 동일과목의 재수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출석평가) ① 학생은 매학기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1/4이상 결석한 자는 그 과목의 학점이 부가되지 않는다.

② <삭제>(개정 2014.03.01)

제21조(자료제출) <삭제>(개정 2014.03.01)

제 3 장 선수과목 이수

제22조(선수과목) ① 시행세칙 제23조에 의거하여 대학원에서는 각 학과에서 정한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시킬 수 있다.

② 선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학부에서,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선수과목의 성적은 통과 시 P(pass), 미통과 시 N(not pass)로 표시하며 평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23조(이수원칙) ①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의 전공이 비동일 학과일 경우에는 석사과정은 9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위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중 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은 6학점 이내,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②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과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과목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석사과정의 학생은 3학기, 박사과정의 학생은 4학기 이내에 선수과목 학점을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03.01)
- ④ <삭제>(개정 2014.03.01)

제24조(선수과목지정) 각 전공별 선수과목의 지정은 학과운영위원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25조(선수과목 인정) ① 석사학위과정 과목 중 선수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과목 가운데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선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에 강의가 개설되지 않아 선수과목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학부과정의 교과목 중에서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 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시행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내규에 따라 제7조제④항은 201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12.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2.0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6.0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8.0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2.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4.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외국어 시험 및 전공종합시험에 관한 시행내규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시행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28조와 시행세칙 제5장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0.10.14.)
- 제2조(자격부여)**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또는 기타 학위논문제출에 갈음하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어 시험과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제3조(응시방법)** 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지원서와 응시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시기)**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 제5조(응시제한)** 외국어시험 및 외국어특강, 종합시험에서 부정행위 및 부적절 행위 시 1년간 해당 시험 및 교과목 수강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신설 2014.03.01)

제 2 장 외국어 시험

- 제6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하며, 휴학생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 하지 않는다. (개정 2011.07.01)
- 제7조(외국어시험 시기)**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외국어시험 과목)**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0.02.)
- 제9조(합격인정)** ① 외국어시험의 합격 인정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 제10조(외국어시험 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재응시 회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11조(외국어시험 면제)** ① 학칙 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은 국가공인 한국어 능력 검증시험 5급(예체능계열 학과의 경우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였을 경우 외국어 시험을 면제 한다.(개정 2018.05.17.)
 ③ 학칙 시행세칙 제30조 제2호 및 국가공인 한국어 능력 검증 시험 성적은 제출일을 기준으로 성적표의 취득유효기간(2년) 이내의 점수만 인정한다. (개정 2011.03.01.)
 ④ 본대학원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본대학원 동일 학위과정(석사 및 박사)에 입학 및 편입학한 경우 영어시험을 면제한다.(신설 2015.12.22.)
 ⑤ 외국(영어권)의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을 이수한 자가 본대학원 학위과정(석사 및 박사)에 입학 및 편입학한 경우 영어시험을 면제한다.(신설 2020.10.14.)
- 제12조(외국어 특강 개설)** ① 학칙시행세칙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외국어 자격시험 대체를 위한 외국어 특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외국어 강좌는 매학기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학기 수강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개설한다.
 ③ 외국어 강좌는 대학원에서 개설하되 대학원의 사정에 의해 직접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외 어학교육원과의 지정위탁수강 협약에 따라 실시하거나 교내 어학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다.

- ④ 외국어 특강 교육과목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고 수업시간은 최소 2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학원에서는 강사선정, 학생 출결사항 등 수업진행의 모든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⑤ 대학원에서 개설 또는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강좌를 이수하고 C학점(70점)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소정의 평가시험에서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외국어자격시험을 면제한다.
- ⑥ 외국어 특강을 수강하고도 소정의 평가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는 외국어 특강 출석률이 7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외국어 특강 추가 수강 시 매회 2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개정 2013.07.01.)
- ⑦ 외국어 특강은 휴학생도 수강할 수 있으나, 외국어 강좌의 시험 결과는 복학하는 시기에 반영한다.
- ⑧ 외국어 시험 대체 특강을 수강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⑨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8.10.02.)

제 3 장 전공종합시험

- 제13조(종합시험 응시자격)** ①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평점평균이 3.0이상으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휴학생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학칙 제19조(학사학위과정과의 연계)에 해당하는 자 중 학기 단축자는 2학기 이상 등록하면 응시 가능하다.
- ②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평점평균이 3.0이상으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휴학생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종합시험은 본인이 수강한 교과목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 제14조(시험과목)** ① 종합시험과목은 석사과정은 2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 ② 전공종합시험과목의 선정은 학과 내규로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교과목 제청에 의거 대학원장이 확정하여 시행한다.
- 제15조(종합시험 재시험)** 종합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고 불합격과목은 재응시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16조(종합시험 출제위원)** 출제위원은 강의 담당교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임교수가 학과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전공분야의 교수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 제17조(합격인정)** 종합시험의 합격 인정은 각 과목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과목이 석사 2과목, 박사 3과목이어야 한다. (개정 2020.08.14.)
- 제18조(평가기준)** ① 전공종합시험의 채점 및 합격판정은 각 시험과목별로 한다.
- ② 채점은 출제교수가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별도의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과목별 합격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시행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외국어특강을 수강한 자는 종전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05.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10.0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08.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이 개정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20.10.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 학위논문 및 지도교수위촉에 관한 시행내규

제1조(목적) 대학원 학칙 제5장 및 시행세칙 제6장의 학위논문의 제출자격 및 지도교수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 ㉠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 논문계획서 승인을 받고, 재학기간 중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 ㉣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자로 평균평점이 B(3.0) 이상인 자
(개정 2014.03.01)

<삭제>(개정 2012.09.01)

- ㉤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본심사 완료예정자. 단, 군복무 등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9.01)

2. 박사과정

- ㉠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재학기간 중 3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4학기 이상)
- ㉣ 본심사 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공인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실적이 100%이상인 자. 단독연구(100%), 2인 연구(70%), 3인 연구(50%), 4인 이상 연구(30%)로 하되 연구원 장학생의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논문은 제외한다. 다만 학술지 등급은 각 학과 내규로 정할 수 있으며, 게재학술지 발간일자는 본 심사 개시일전까지로 한다. 단 예능계열에 한하여 대학원장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 연구논문 이외의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저자의 소속 : "경기대학교" 또는 "경기대학교 대학원" 또는 "경기대학교 대학원 ○○학과" 반드시 표기](개정 2012.09.01., 2014.03.01., 2019.06.20.)

- ㉤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자로 평균평점이 B(3.0) 이상인 자(개정 2014.03.01)
- ㉥ 수료일로부터 8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본심사 완료예정자. 단, 군복무 등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삭제>(신설 2014.12.05., 개정 2019.06.20.)

제3조(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배정 및 논문계획서 제출) 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은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 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4개 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전임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위과정별 논문지도교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2. 박사학위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상자는 논문지도학기가 도래하기 전에 논문연구계획서와 논문지도희망교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학원장은 해당 주임교수의 자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논문지도학기 개시 전에 확정 고시하여야 한다.
- ⑤ 각 과정별 논문지도교수의 위촉은 학생들의 논문지도학기 개시 직전 학기말에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단, 외부 인사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필요학기에 할 수 있다.

제4조(논문지도) ①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작성에 대한 지도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3.)

- ② 논문지도는 석사학위과정은 2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2006학년도 이전 박사학위과정 입학자는 4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③ 박사학위 논문지도교수는 한 학기에 학위청구 심사에 제출된 논문 3편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없다. 다만, 초과하여 지도해야 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대학원에서 책정한 소정의 논문지도비를 학위청구논문 제출 학기에 다음의 서류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11.03.)

1. 논문지도 종합결과 보고서 1부.

제5조(논문지도교수 변경)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논문지도교수변경신청서 1부.
2. 지도교수동의서 1부.
3. 학과운영위원회 의결서 1부.

제6조(학위논문 작성언어)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제7조(공개발표의 진행) ① 각 학위 과정별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본 심사 전에 반드시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② 당해 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소정 양식의 공개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의 승인 및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개발표는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 및 소속 학과 전임교수 그리고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공개발표는 학과주임교수의 주관으로 정해진 학사일정기간에 실시하되, 최소 공개발표일 1주전에 공고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발표 및 판정) ① 참관교수 또는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 ② 학칙시행세칙 제44조에 의거 주임교수는 공개발표 결과보고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해당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 심사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개발표 전 발표내용, 시기, 방법, 절차 등 기타 공개발표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과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학과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학위청구논문제출) 공개발표에 통과하여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및 심사위원 추천서 1부
2. 경력 및 연구실적조서 1부.
3. 각 학과별 연구논문 발표 실적(박사학위과정에 한함)

제10조(본 심사) ① 석사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본 심사기간은 대학원장이 확정하여 공개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논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은 그 심사 기간의 연장을 대학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합격된 논문제출) 규정된 서식에 의거 완성된 학위논문 5부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9.01., 2014.03.01., 2015.06.05., 2017.11.30., 2019.04.29.)

제12조(불합격 판정 및 재심사) ① 논문심사의 결과가 학위 논문으로서 불충분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 연구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된 자는 해당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다음 학기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 내용의 미비, 기타의 사유로 심사가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학원 장에게 보고하고 제출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논문제출기간의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이 내규 제2조 석사과정의 ㉠호 ㉡호의 적용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내규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시행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2.0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5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5.06.0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11.0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학년도 후기 졸업자들부터 논문지도비 납부 시 기존 납부 금액을 제외하고 대학원에서 책정된 논문지도비를 납부한다.

부 칙(개정 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4.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6.2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내규

제1조(목적) 대학원학칙 제6장의 학위수여의 자격 및 명예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시행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수여자격) 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과정

- ㉠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 ㉡ 취득학점의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자
- ㉢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 ㉣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 2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자
- ㉥ 공개발표 심사 및 논문 본 심사에 합격한 자
- ㉦ 수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군복무 등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박사과정

- ㉠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 박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36학점 이상)의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자
- ㉢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 ㉣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 3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4학기 이상)
- ㉥ 공개발표 심사 및 논문 본 심사에 합격한 자
- ㉦ 수료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군복무 등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학위 등의 표기)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각 과정별 및 각 학과별 학위수여 표기는 별지 1 내지 4의 서식을 참조한다.

제4조(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의 당해 학기 학위수여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5조(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경기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예견되는 자에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여한다.

1.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후보자를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 심의하고 수여할 학위종별을 결정한다.(개정 2017.06.23., 2018.10.02)
2.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의결을 대학원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3.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명예박사학위 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수여 여부를 확정한다.
4. 총장은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사항에 따라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
5. 명예박사학위는 본 대학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학위취소) 석·박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허위와 위계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기타 불명예스럽게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학위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3.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시행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6.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10.0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한다.

7. 주임교수 위촉 및 학과운영위원회에 관한 시행내규

제1조(목적) 대학원학칙 제9장 제44조 및 45조에서 규정한 각 학과에 운영위원회 설치와 주임교수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각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 전임교수나 학부의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가운데서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제청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주임교수 서리를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4.03.01)

제3조(임기)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학원장은 학부의 학과장 또는 해당전공 주임교수와 겸직을 원칙으로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임무) 주임교수는 석사 및 박사과정의 교과운영 전반 및 연구의 지도를 주관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시간표 작성과 강사 추천
2. 강의의 원활한 진행
3. 전공분야에 대한 학생의 연구지도와 논문지도교수 추천
4.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5. 학생의 신상파악
6. 소속 학과의 발전을 위한 대학원장의 자문 역
7. 기타 각 학과 및 전공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촉) 각 학과 및 전공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

제6조(학과운영위원회) 대학원의 각 학과는 학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과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내규 제·개정
2. 교육과정 편성
3. 주임교수 추천
4. 논문지도교수 배정
5. 기타 학과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과 또는 전공 소속 전임교수 전원으로 한다.(개정 2020.10.14.)

② 통·폐합된 학과의 경우에는 통·폐합 전 학부과정의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를 반드시 포함한다. 다만, 학과 소속교원이 3인 이하인 경우 해당 학과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이 협의하여 대학원장이 추가로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20.10.14.)

③ 위원회 위원장은 학과 주임교수로 한다.

제9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면으로 안건에 관한 구체적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당해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제·개정 및 폐지) 학과내규 제·개정 및 폐지,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시행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10.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8. 장학금 지급 시행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에서 정한 본 대학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와 수액)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학원장 장학금
 - ㉠ 진 : 당해 학기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 ㉡ 성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 ㉢ 애 : 당해 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
2. 연구원 장학금
 - 등록금 전액 면제(최장 석사 4학기, 박사 5학기)
3. <삭제> (개정 2018.01.29.)
4. 본교 직원 및 교직원자녀 장학금(개정 2015.12.22., 2020.12.09.)
 - ㉠ 본교 직원 : 등록금 전액 면제
 - ㉡ 교직원자녀 : 등록금의 50% 감면(최장 석사 4학기)
5. 학부연계 장학금
 - 첫 학기 등록금 50% 감면
6. 학.석사연계 장학금
 - ㉠ 입학금 면제
 - ㉡ <삭 제> (개정 2016.06.17)

<삭 제> (개정 2011.07.01)
7. 공로 장학금
 - ㉠ 진 : 당해 학기 2,500,000원
 - ㉡ 성 : 당해 학기 2,000,000원
 - ㉢ 애 : 당해 학기 1,500,000원
8. 연구장려 장학금 (개정 2018.01.29., 2018.05.17.)
 - 최대 200만원
9.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장학금(개정 2016.11.03., 2018.01.29.)
 - ㉠ 진 : 첫 학기 등록금 50% 감면
 - ㉡ 성 : 등록금 30% 감면
 - ㉢ 애 : 등록금 20% 감면
10.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 지급 액수는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
11. 동문장학금(신설 2014.10.17. 개정 2018.01.29.)
 - ㉠ 동문장학금A : 첫 학기 등록금 50% 감면
 - ㉡ 동문장학금B : 첫 학기 등록금 30% 감면
 - ㉢ 장학금액은 학교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개정 2012.09.01)

제3조(장학생의 선발) ① 제2조의 장학금을 지급 받을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대학원장 장학생

- ㉞ 석·박사학위과정 학생 중 학교 발전 혹은 사회 공익 증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 ㉟ 본교 학부의 각 학과 최우수성적졸업자 중 대학원의 동일 혹은 유사계열 석사과정에 진학한 자
- 2. 연구원 장학생
석·박사학위과정 신입생으로 동 내규 제4조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자
- 3. <삭제> (개정 2018.01.29.)
- 4. 본교 직원 및 교직원자녀 장학생(개정 2020.12.09.)
 - ㉞ 본교에 재직 중인 직원(조합원)
 - ㉟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직계 자녀
- 5. 학부연계 장학생
석사학위과정 신입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의 과목을 2과목(6학점) 이상 이수한 자
- 6. 학·석사연계 장학생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석사연계과정을 지원하여 이수한 후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
- 7. 공로 장학생
 - ㉞ 진 : 대학원 원우회 회장
 - ㉟ 성 : 대학원 원우회 부회장
 - ㊱ 애 : 대학원 원우회 기타 간부
- 8. 연구장려 장학생 (개정 2018.01.29., 2018.05.17.)
석·박사학위과정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자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㉞ <삭 제> (개정 2015.12.22)
 - ㉟ <삭 제> (개정 2018.01.29)
 - <삭 제> (개정 2011.07.01)
- 9.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장학생(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 가입자에 한함)(개정 2016.11.03.)
 - ㉞ 진 : 5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교장, 교감)으로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㉟ 성 : 공무원 중 정원외로 입학한 군위탁자 또는 정부 위탁자
 - ㊱ 애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 10. 외국인 유학 장학생
지급대상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개정 2012.09.01)
- 11. 동문장학금
본교 학부과정을 졸업하거나 본교 학점은행제 학사과정을 수료(총장명의증서수여)하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장학금 이중수혜불가 및 학·석사연계장학생, 학부연계장학생 제외)(신설 2014.10.17., 개정 2015.12.22., 2016.06.17., 2016.12.28., 2018.01.29.)

제4조(연구원장학생 선발) ① 연구원장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통해 선발하며, 당해 연도 신입생(전년도 후기 입학자 포함)을 대상으로 각 학과 내규 또는 학과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장학생 추천 교수는 지원한 교수 중 최근 2년의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연구실적은 연구처가 관리하는 교수업적 연구영역 점수를 준용한다.
- ③ 연구원장학생 지도교수는 연구원장학생 추천 시 신입생 합격자 중 경제적 사정 곤란자를 추천하되,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본교 졸업(예정)자를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연구원장학생 선발 세부지침은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07.01)

제5조(연구원장학생 의무) ① 연구원장학생 및 지도교수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연구원계획서 : 입학 후 1개월 이내.
- 2. 서약서 :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수업연한기간동안 전일제 학생 신분 유지, 미 졸업 감수 및 지도교수

의 연대책임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연구중간보고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 매 학기말.
 4. 연구실적물 : 학위논문 제출 시 연구실적물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2.07.)
- ② 연구원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수업연한기간 동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 ㉠ 석사과정 : 4학기, 단 학부연계과정은 3학기(개정 2015.04.03)
 - ㉡ 박사과정 : 5학기
 2. 각 학위과정 수업연한기간 내에 지도교수와 2인 이상 공저로 ㉠ 및 ㉡에 규정된 연구업적 점수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해야 한다. 연구실적물은 교수업적평가관리규정[별표 1]의 특A급, 저명, SCOPUS 국제학술지 또는 A급 국내학술지에 게재되어야 한다. 단 이.공 계열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A급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실적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3.07.01., 2018.01.29.)
 - ㉠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
 - a. 석사과정 : 28점
 - b. 박사과정 : 84점
 - ㉡ 이.공 계열
 - a. 석사과정 : 40점
 - b. 박사과정 : 56점
 - ㉢ 게재된 논문에는 반드시 "본 연구는 20××학년도 경기대학교 대학원 연구원장학생 장학금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또는 "This work was supported by Kyonggi University's Graduate Research Assistantship 20××."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개정2012.03.01, 2012.09.01., 2015.12.22., 2016.06.17)
 - ㉣ 2인 이상의 연구원장학생이 공저자에 포함된 논문의 경우, 실적인정은 1개 논문 당 1명만 인정한다.
 - ㉤ 교내연구과제 연구결과물은 연구원장학생 연구실적물로 중복 제출할 수 없다.
 - ㉥ 연구원장학생 장학금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실적물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구실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신설 2017.03.31.)
3. 연구실적물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도교수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1학기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단, 그 기간 동안은 학위취득이 보류된다.(신설 2022.02.07.)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물 제출 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1학기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연구원장학생의 지도교수는 향후 2년간 연구원장학생 지도교수 선발에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22.02.07.)
- ③ 연구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해당 지도교수와 연대하여 즉시 학교에 환입하여야 한다.
1. 취업 등으로 전일제학생 신분을 상실한 자(개정 2012.09.01)
 2. 스스로 연구원장학생 신분을 중도 포기한 자
 3. 휴학, 자원퇴학, 제적된 자
 4. 지정된 기간 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한 자
 5. 단, 천재지변, 건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환입을 유예 받거나, 연구원장학생을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3.03.01)
- 제6조(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3.5점 미만인 자.(개정 2013.10.01)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를 미등록 휴학한 자.(개정 2012.09.01)
 3. 삭제(2011.03.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장학금의 적용례) 제4조의 연구원 장학생선발기준의 적용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제1항의 2호 연구실적물 인정기준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내규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시행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내규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이전의 내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개정 내규 시행 이후 재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은 이 개정 내규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비감면장학금에 따른 경과조치) 2012학년도 전기 입학생까지의 본교 조교에게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내규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이전의 내규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이전의 내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개정 내규 시행 이후 재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은 이 개정 내규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내규 시행일 이전에 선정된 연구원장학생은 개정 전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신설 2015.10.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4.0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생 선발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내규 제3조 1항 11호의 동문장학금 수혜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와 수액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내규 제2조 1항 4호의 교직원자녀 장학금 기준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교직원 자녀 장학생은 시행 전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6.06.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11.0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12.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3.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9.2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01.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0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9항과 제11항 및 제3조 제11항은 2018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개정 2018.03.13.)

부 칙(개정 2018.05.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12.0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02.0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9. 학점교류 수강 시행내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0조, 제21조에 의거 타학과 및 교내·외 대학원간 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3.)

제2조(타학과 및 타대학원 수강학점) ① 본교 타 학과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당 3학점 이하로 하며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학·연·산 협동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에 따라 학기당 6학점, 총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② <삭 제> (개정 2021.10.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학점교류수강신청절차) 학점교류에 의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1.10.13.)

1. 학점교류에 의하여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전에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수강과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3.)
2. 수강 과목이 결정되면 소정의 학점교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21.10.13.)
3. 수강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의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와 사유서를 수강신청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3.)
4. 타학과 및 교내 타대학원 과목은 학생이 교내 수강신청 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신청하고, 교외 타대학원 과목은 해당 대학의 안내에 따른다. (개정 2021.10.13.)

제4조(타 학과 및 타 대학원 수강과목) ① 타 학과 및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전공관련 교과목은 소속 대학원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교과목으로 정하며, 원칙적으로 수강신청 대학교 전임교수의 담당과목으로 한다.

② 타 학과 및 교내의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각 학위과정 전용과목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학생의 필요에 따라 전공과목 외 교과목을 자유선택으로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타 학과 및 타 대학원에서 수강을 하는 경우 소속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타 학과 및 타 대학원에서의 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타 대학원 수강생의 준수사항 및 시설이용) ① 본교 또는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수강을 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국내·외 타 대학원간 협약에 따라 해당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기타) 교외 타 대학원간 학점교환 협약에 따라 명지대와 아주대는 1995학년도 제2학기부터, 건국대, 한양대, 인하대, 광운대, 수원대, 가천대, 단국대와 서울여대는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시행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8.05.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10.1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0. 외국인의 입학 및 장학금 지급 시행내규

제1조(목적)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국내·외 외국인 입학과 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세부 시행 방안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대학원 각 학위과정 입학전형에 대한 외국인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로서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
2. 박사학위과정: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로서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

제3조(정의) “외국인”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개정 2012. 3. 1)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4조(모집학과) 모집학과는 대학원 통합학칙 제4조의 학위과정 전 학과로 한다.

제5조(모집시기) 학생의 모집 시기는 대학원 입학전형 일정에 준한다.

제6조(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다만, 입국사증 관계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원자의 경우, 또는 입학원서 제출 당시 자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류심사에 의해 조건부로 입학할 허가를 하고 입국한 후에 구술시험 및 기타 검증에 의해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선발한다.

제7조(제출서류)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삭제 2017.08.04.>
3.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
 - ㉞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 1부와 함께 해당국 대사관에서 공증 확인 STAMP를 받은 후 제출
 - ㉟ 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졸업증명서와 대학원졸업 또는 졸업 예정증명서 각 1통
4. 대학성적증명서 1통
 - ㉞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 1부와 함께 해당국 대사관에서 공증 확인 STAMP를 받은 후 제출
 - ㉟ 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통
5. 출신지 거민신분증 Copy본 1통(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지원자에 한함)
6. 본인 여권 사본 1통 (반드시 학교에서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
7.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8. 재정능력 입증서류(개정 2016. 11. 30)
9. 국가공인 한국어 능력검증 시험 성적표 원본 1부.
10. 기타 필요한 서류(개정 2017.08.04.)

제8조(입학허가기준) 외국인이 본교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3)

1. 자국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를 전공(부전공)하였거나 국내 정규 대학(원)을 졸업한 자
2. 국가공인 한국어 능력 검증 시험 성적이 4급(예·체능계열의 경우 3급) 이상인 자(개정 2017.08.04.)
3. 본교 또는 기타 한국내 어학원에서 한국어과정 4급 이상을 수료하여 대학원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자(개정 2014.03.01., 2021.10.13.)
4. 제1항 내지 3항의 외국인 학생의 입학자격 요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과 주임교수가 학과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 후 모든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관리책임을 보증하고 입학 허가를 대학원장에게 요청하여 허가를 득한 자

제9조(한국어과정 이수) 제8조 4항의 적용을 받은자와 글로벌특성화학과, 기타 국제학술교류협력에 의하여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중 한국어 사용 능력이 미흡한 학생(TOPIK 4급 미만)은 입학 후 1년간 본교 어학 교육원에서 한국어교육과정을 이수(또는 4급 이상 수료)하여야 하며 미이수자는 졸업자격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9.12.03., 2021.10.13.)

제10조(장학금 지급) 대학원은 대학원 교육 및 연구의 세계화를 구현하고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교내장학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12조(장학금의 종류와 수액) ①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07.01., 2015.12.22., 2017.10.10., 2018.01.29..)

1. 최우수장학금 : 등록금 전액
2. 우수장학금 : 등록금의 50%
3. 연구장학금 : 등록금의 40%
4. <삭제> (개정 2018.01.29.)
5. 교류장학금 : 등록금의 20%

② 위의 장학금과 별도로 소정의 외국인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장학금의 종류와 수액은 당학년도 예산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장학생의 선발) ① 제10조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선발한다.

1.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의 총장 또는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본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자국 대학의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으로서 학문의 성취도가 높은 자
4. 본교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

② 장학생은 입학사정 시기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금의 종류는 매학기 심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18.03.13.>

제15조(학칙 및 내규의 적용)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인에게는 대학원 학칙 및 제반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시행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11.0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8.0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10.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01.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03.1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12.0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10.1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1.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19조의 2(학·석사 연계과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연한)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3.5년으로 한다.
2. 석사학위과정 1.5년으로 한다.

제3조(지원자격 및 선발) ① 학·석사 연계과정의 지원자격 및 선발은 학부 시행세칙에 의거 학부에서 실시하며, 그 결과를 대학원으로 통보한다.

- ② 대학원 지원학과(전공)는 학부 학생소속 학과(전공)와 동일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한한다.
- ③ 선발된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매년 2학기에 입학한다.
- ④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대학원 재학기간 동안 전일제 학생이어야 한다.

제4조(제출서류) 대학원 지원자는 대학원 입학 지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인원) 선발 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제6조(인정학점) 학부에서 이수한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은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졸업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7조(등록 및 취소) ①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대학원에서 발부한 등록고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②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 할 수 있다.
- ③ <삭 제>(제정 2012.09.01)(개정 2016.06.17)
- ④ 대학원 등록 이전에 학·석사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학부졸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대학원 전공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등록하지 못한다.
- ⑤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 질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8.10)
- ⑥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제적이 되더라도 등록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이수학점) 대학원 이수학점은 대학원 입학년도의 대학원 학칙 24조에 의한다.

제9조(준용규정) ①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학사과정 재학 중에는 학부의 학칙을 적용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때에는 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

- ② 이 시행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종전 학칙에 의한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내규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내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내규의 제24조, 제25조, 제26조는 2005년 9월 1일 부터 적용하며, 제47조, 제57조, 제58조는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2004년 3월 1일 시행 전 학칙에 의거한 외국어시험에 응시하여 영어 과목을 합격한 자는 2004년 3월 1일 이후 시행되는 학칙에 의한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제46조는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8.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06.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시행내규

제1조(목적) 이 시행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17조의2(수업)에서 정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 이상을 원격(방송·통신)의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을 말하며, 원격수업에는 온라인수업, 원격강의, 가상강의, 전자강의 등의 용어를 포함한다. 다만, 강의실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서 원격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원격병행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 미만을 원격의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교과목 구성 및 학점인정) ① 제2조1호에서 정한 원격수업 개설 가능 교과목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각 전공(학과)의 총 개설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수료가능 학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2조2호에서 정한 원격병행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은 모두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조(학점당 이수시간) 원격수업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① 원격수업의 수업일수는 대학원학칙 제17조의3에 따라 매 1·2학기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목의 특성에 따라 블록형태(주 또는 일 단위) 등의 집중이수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1차시의 수업 콘텐츠 진행시간은 최소 25분(1학점 기준)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토론수업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5분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③ 1차시 총 학습시간은 50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시수인정 및 강사료)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시간에 대한 교원의 시수인정 및 강사료 산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출석관리) ① 원격수업의 출석인정 기준(접속시간 등을 포함한다) 및 결석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출결처리는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등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8조(평가관리) ① 학생의 성적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는 출석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따른 예외사항의 경우에는 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등의 평가근거자료는 4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원격평가를 실시한 이후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소한다.

제9조(운영관리) ① 원격수업의 질 관리와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강좌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원격수업의 콘텐츠가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콘텐츠 수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 및 교수 등에게 유지·수정·보완·재제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 권고를 받은 학과 및 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콘텐츠를 수정·보완·재제작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방법) ① 원격수업에 의한 교과목 운영 및 학점취득 등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LMS)으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기타 국내외 기관 등과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 과목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에서는 정해진 기간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콘텐츠 개발 및 지원) ① 학교는 원격수업을 위한 원활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위해 시설, 기자재, 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1조①항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절차·방법·기간·과목명·콘텐츠의 종류 등을 명시한 콘텐츠 개발 신청서를 대학원을 거쳐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콘텐츠는 문서(PPT, PDF, 아래한글, MS Word 등) 또는 영상(동영상, 플래시 등) 또는 이미지(그림, 사진 등) 등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원격수업의 원활한 진행 및 관리(출석관리, 평가관리, 품질관리 등)를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해 개발된 콘텐츠를 본교 원격수업 이외에 K-OCW 및 K-MOOC 등에 등재하고자 할 경우, 교수학습개발센터를 경유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콘텐츠는 제9조에서 정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⑥ 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자 하는 교원은 국내 저작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원격수업의 관리 및 운영) ① 원격수업과 관련한 교과목의 개설 및 성적평가, 학사운영 등의 관리는 각 대학원에서 주관하며, 기타 사항은 본교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원격수업을 위한 웹사이트의 관리, 콘텐츠 관리, LMS 온라인 관리, 교수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한다.

제1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시행내규

제1절 총 칙

제1조 (목적) 이 시행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기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타 대학원(이하 “협약 대학원”이라 한다)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생 교류를 통한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시행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학위』란 본 대학원과 협약 대학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양 대학교가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2. 『복수학위』란 본 대학원과 협약 대학원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양 대학원의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 대학교에서 별도의 학위증서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제3조 (학위수여)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는 본 대학원의 학위수여 조건과 대학원간 협약서에 명시된 학위수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절 본 대학원생의 협약 대학원 수학

제4조 (지원자격 및 선발) 공동학위와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의 자격과 선발절차는 대학원간 협약서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수학기한)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 대학원에서 동등한 기간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세부사항은 협정서를 통하여 따로 정한다. 협정서에 명시되었거나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학점인정 및 성적)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학생은 협약 대학원에서 수학기간이 종료된 후, 본 대학원이 지정한 기한까지 협약 대학원 성적증명서 등을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수 교과목은 전공 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공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③ 협약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공동학위과정으로 수학한 경우는 학점 및 평점을 모두 인정한다.
2. 복수학위과정으로 수학한 경우는 협약 대학원에서 취득한 교과목 명칭을 성적증명서에 등재하되, 본 대학원의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과 심의를 거친 후 대체 인정한다.
3. 복수학위과정으로 협약 대학원에서 취득한 성적은 P (Pass)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학과 심의를 거친 후 본 대학원 성적등급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④ 협약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수료를 위한 학점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다만, 학점인정에 대한 별도의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에 따른다.

제7조 (학위논문) ①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은 본 대학원 학칙 및 시행내규 상의 학위논문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은 우리 대학원과 상대 대학원의 학위논문으로 별도 심사절차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정에 따라 상대 대학에서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경우 본 대학 학위논문 심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 제출한 논문을 우리 대학원의 학위로만 인정할 수도 있다.

④ 복수학위와 공동학위의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및 학위논문은 본교와 외국 대학원에서 모두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등록 및 수업료) ① 본 규정에 의거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본 대학원생은 수학 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대학원과의 별도 합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②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과정의 학생은 협약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동안 본 대학원에 재학한 것으로 본다.

③ 대학원은 공동학위나 복수학위과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를 이수하는 본교 학생은 외국 대학원 수학 중 1회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해당 휴학기간에 대하여 본교에서도 휴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9조 (공동 및 복수학위의 포기) ① 공동 및 복수학위 학생으로 선발되어 중도 포기할 경우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주임교수의 동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중도 포기생의 교류대학 취득 학점의 인정여부는 소속 학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절 협약 대학원생의 본 대학원 수학

제9조 (수강신청, 성적, 학점취득) 수강신청, 성적 및 학점취득은 본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상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학사지도 및 관리) ① 본 대학원 수학기간 동안 협약 대학원생의 지도 및 관리는 협약 대학원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약 대학원생은 본 대학원생에 준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수학기간)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 대학원에서 동등한 기간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었거나 협약 대학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 및 수업료) ① 협약 대학원생은 본 대학원 수학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대학원과의 별도 합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② 대학원은 공동학위나 복수학위과정 협약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시행내규나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제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